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31-01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

 최
 병
 옥
 부
 연
 구
 위
 원

 황
 의
 식
 연
 구
 위
 원

 에시마리에
 인
 턴
 연
 구
 원

 김
 건
 우
 우리로종합법률사무소

 서
 성
 저울종합법무법인

 김
 석
 중
 서울종합법무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최병옥 연구총괄 황의식 원예자조금 발전방안 에시마 리에 인 턴 연 구 원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해외사례 김건우 우리로종합법률사무소 원예자조금 발전방안 법률적 검토 서 영 서울종합법무법인 원예자조금 발전방안 법률적 검토 김석중 서울종합법무법인 원예자조금 발전방안 법률적 검토

머리말

최근 농산물 무역 및 유통환경은 WTO, UR타결과 동시다발적인 FTA체결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농산물 무역 및 유통환경변화로 생산자 단체들의 자율적인 시장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분야의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위한 정책은 1990년도부터 시도되어 왔다. 축산부문 자조금은 국내 최초로 1990년에 법제화가 이루어져 현재 활발하게 추진 및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예부문의 자조금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수급안정, R&D 분야, 생산자 단체 및 마케팅 조직 육성 등의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품목의 모든 경제주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FTA 등 세계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여지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원예분야도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중요하고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원예 분야에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현 실태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과 법률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사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관계 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농협 중앙회 원예사업부, 파프리카 자조금 단체, 인삼 자조금 단체, 백합 자조금 단체, 참다래 자조금 단체 등에게 감사드린다.

2012.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동필

요 약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품목군별 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1990년부터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 일례로 축산부문 자조금은 1990년 농어촌발전 특별조 치법에 자조금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한국 최초로 자조금 법제화가 이루어 졌다. 축산부문에서는 양돈, 한우, 양계, 낙농 분야에서 자조금 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 원예부문 자조금은 2000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2009년 품목별 대표조직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원예 분야의 기존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자조금 단체가 해당 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원예 분야 실태에 적합하도록 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350호)'은 2012년 2월 22일에 공포되고 2013년 2월 23일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자조금 법 도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원예 분야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하여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사무국 운영비 보조, 자조금 평가를 국내 및 해외사례,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은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시 법률적 고려사항을 알아보았다. 현재 의무자조금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농수산자조금의 조 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장은 자조금 해외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외사례는 미국, 영국, 네덜란 드, 뉴질랜드, 호주의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품목과 관련된 경제주체가 상호 협력하며 시장규모를 확장시키는 것과 자조금 제도를 입법화하여 의무와 권한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자조금 운영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였고 자조금 거취 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의무자조금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의무자조금제도의 핵심이슈 6가지를 바탕으로 각 이슈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은 축산 분야와는 달리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생산자 조직화, 통합 마케팅 조직을 주체로 하는 수직적 계열화, 자조금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하여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수급안정, R&D 분야, 생산자 단체 및 마케팅 조직 육성 등의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품목의 모든 경제주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제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1.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 2.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보, 3. 해당 품목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무자조금 단체 발전의 선도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Activation Measures of Horticultural Crop Checkoff Program according to Legislation of Agriculture, Fisheries Checkoff Program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sector, policies for composing checkoff programs by groups of item have been carried out several times since 1990. For example, including articles about checkoff program in Rural Developmen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Checkoff programs of livestock sector was legislated. In the field of swine, hanwoo(korean cattle), poultry, dairy, checkoff programs are being actively promoted.

On the other hand, it was started to enforce checkoff programs in horticultural sector by the law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and Price Stabilization Act'. In 2009, businesses of representing groups separated by items was promoted so as to vitalize checkoff programs in horticultural crop sector. A lack of awareness of producers and producer organizations, However, hindered activation of checkoff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f existing representing groups separated by items and groups of checkoff programs in horticultural sector adopt mandatory checkoff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own items, in that cas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observe problems and alternatives found in the law of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griculture, Fisheries checkoff program' in order to change the law to fit in the current status of horticultural sector.

The law of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griculture, Fisheries checkoff program', however, is scheduled to be conducted on February 23, 2013, because it is the initial step, characteristics of the horticultural sector was not specifically reflected.

with respect to introducing the law, six key issues are becoming important, which are 'selecting target group who are contributed in mandatory checkoff program', 'sanctions when unpaid to mandatory checkoff program', 'expertise and independent status of bureau of mandatory checkoff program', 'subsidizing operation cost of bureau', 'evaluation of checkoff program'. In this study, those issues are analyzed by researching similar cases

from abroad and previous study. Then, it is proposed that several ways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enforcement of the law.

In chapter 2, legal considerations after introduce mandatory checkoff program are investigated. Current status and challenge are investigated. Then,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 chapter 3, overseas cases of checkoff program are examined. Those cases from the five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New Zealand, Australia, were surveyed. Overall cases are summarized in two point of view. One thing is that, in those five countries, commonly, they have focused on raising the size of the market in cooperation with economic entities established by groups of items. Another one is that they added a provision for checkoff program in related laws to emphasize the obligations and right to join in checkoff program. Also, their governments have continually conducted the rol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distributed benefits generated from running checkoff program.

In chapter 4, measures for developing checkoff programs are analyzed. Suggested 6 key issues about mandatory checkoff program earlier, anticipated problems after operating checkoff program by each issue are report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Futhermor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are reviewed comprehensively to examine whether those are formed properly to legislate or not.

Consequently, checkoff program in horticultural crop sector, because there exist a lot of distribution channel and lack of awareness about checkoff program, organizing producers, and vertical integration for combining marketing organization unlike livestock sector, it will be difficult to introduce checkoff system in short period. In spite of this 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andatory checkoff system in Korean horticultural sector, as promoting policies that can satisfy all of economic participant is difficult in a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s role is limited within five field, stabilization of demand and supply, fostering R & D, promoting producer and marketing organization. Overcoming current limi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it can be expected that checkoff programs are widely used such as abroad cas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New Zealand, Australia.

Finally, the basic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mandatory checkoff system. There are 4 basic directions propos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producers and

producer organizations, system ensur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y initiatives, contribute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specific item, lead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Researcher: Choi, Byoung-Ok E-mail address: bochoi@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내용	
5. 연구 범위	······ 7
제2장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문제점	
1.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9
2.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문제점	26
제3장 자조금 해외사례	
1. 미국의 자조금 제도	35
2. 영국 ·····	
3. 네덜란드 ·····	
4. 뉴질랜드	52
5. 호주	
6. 시사점	62
제4장 의무자조금 제도 발전방안	
1. 자조금 거출 대상 및 법률적 검토	64
2.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및 법률적 검토	67
3. 의무자조금 미남 시 제제조치 및 법률적 검토	69
4. 사무국의 독립성 및 저무성 환보와 번륙적 검토	73

5. 사무국 운영비 보조 범위와 법률적 검토78	
6. 자조금 운용 평가81	
제5장 결 론	
1.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87	
2. 품목단체의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방안90	
부록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94	
부록2.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절차113	
참고 문헌116	

표 차 례

제2장	
丑 2- 1.	원예분야 자조금 부담 주체11
丑 2- 2.	각 국의 자조금 제도 운영 현황·······13
丑 2- 3.	파프리카 자조금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견15
丑 2-4	자조금 징수 기준 및 거출기관17
亞 2- 5.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의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사항 · 18
丑 2- 6.	연도별 파프리카 자조금 조성 및 참여 농가 현황21
丑 2- 7.	파프리카 자조금 사무국 2011년 운영비22
丑 2-8.	호주의 의무자조금 조성 규모 및 정부보조 현황23
丑 2- 9.	의무자조금 참여 주체에 따른 장·단점27
제3장	
亞 3- 1.	네덜란드 원예분야 종자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47
丑 3-2.	네덜란드 원예분야 종자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48
翌 3- 3.	네덜란드 원예분야의 도매시장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49
丑 3- 4.	네덜란드 원예분야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도매시장 미경유) … 51
제4장	
丑 4- 1.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의 시행규칙 개선 안66
丑 4- 2.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의 시행규칙 개선 안68
丑 4- 3.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미납시 제재조치 개선안72
亞 4- 4.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장점 및 단점 … 75
亞 4- 5.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76
丑 4-6.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80

丑 4- 7.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운용평가 개선방안83
제5장	
丑 5- 1.	의무자조금 단체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임의자조금 단체가 있는 경우)91
丑 5- 2.	의무자조금 단체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임의자조금 단체가 없는 경우)92
부록	
표-부록.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115

그림차례

제2장	
그림 2- 1.	국내 신선 청과물 유통 경로별 거래물량 비중(2010)29
제3장	
그림 3- 1.	네덜란드 원예분야 종자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47
그림 3-2.	네덜란드 원예분야 종자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48
그림 3-3.	네덜란드 원예분야의 도매시장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50
그림 3- 4.	네덜란드 원예분야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도매시장 미경유)51
제5장	
그림 5- 1.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안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품목군별 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1990년부터 여러 차례 실시되었으나 원예분야는 생산자 단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자조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축산부문 자조금은 1990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자조금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한국 최초의 자조금 법제화가 이루어 졌음. 축산부문은 양돈, 한우, 양계, 낙농 분야에서 자조금 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원예부문 자조금은 2000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 안법)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2009년 품목별 대표조직 사업 등이 추진되면 서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인식부 족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음.
- □ 원예분야에서 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임.
 - 농산물 무역 및 유통환경은 WTO, UR 타결과 세계 여러 국가와 동시다 발적인 FTA를 추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정부가 직접보조 등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시장 대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예산업 분야에서 생산자 단체의 시장대응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선별시설, 가공 및 저 장시설, 생산자 조직화 지원, 통합 마케팅 주체 육성 등의 정책사업을 실 시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생산자의 자율적 시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 대표조직이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메칭펀드 형태로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품목별 특성 에 적합하게 수급안정, 홍보 및 판촉행사, 시장개척, 연구개발 등의 분야 에 사용하게 됨.
 - 그러나 원예분야는 파프리카, 화훼류 등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서 자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농협위 주의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대표조직에 대납하고 있는 실정임.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시작한 품목별 대표조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13년부터는 중단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는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품목별 대표조직 사업이 2010년에 시작되면서 품목별 대표조직이 자조금 을 각출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음.
 - 우리나라 원예산업은 외국과 달리 영세규모의 생산자가 전국에 산재하여 있고 품목에 따라서 산지유통인의 시장개입이 활발하여 농협이나 영농조 합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의 취급률이 낮은 품목이 많아 자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상태임.
 -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낮은 인식은 원예작물의 수급불 안을 초래하고 생산자의 시장대처 능력 저하, 유통구조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 □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지역은 품목의 특징을 반영하여 자조금 제도가 과 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의 분야에서 활성화 되고 있음.
 - 미국은 1935년부터 Florida Citrus Advertising Tax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수백 개의 자조금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혹은 주 단위로 실시되었음.
 - 미국의 자조금 제도는 자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생산자의 무임승차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 법에 의해 강제적인 자조금 징수(Mandatory Check-Off System)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자조금 사용처는 주로 소비촉진 프로그램이며 원예분야의 자조금 징수는 아보카드, 블루베리, 망고, 수박 등의 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네덜란드 자조금 사업은 생산물 위원회(Product Board)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품질관리, 기술개발 및 연구, 소비촉진 등에 활용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생산물 위원회는 약 4만 여개에 달하는 네덜란드 내의 원예 분야 단체를 통합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에서 결의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네덜란드 자조금 사업의 특징인 자조금 사업 참여자가 생산자 뿐만이 아니고 도매 및 소매 종사자, 무역업자,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 외국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의 해당 품목 의 경쟁력 강화, 생산자의 시장대응 능력 향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

덜란드는 생산자 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자, 가공업자, 무역업자 등도 참여 하여 해당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 원예분야에서 자조금이 갖는 의미는 농산물 유통 및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생산자 단체의 시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정부는 2000년대부터 원예 분야 자조금 조성을 위하여 자조금 제도, 품목 별 대표조직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낮은 인식도와 저조한 참여율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국내에서 원예 분야 자조금 조성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 등이 재조명되어 국내실정에 적합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2. 연구 목적

- □ 이 연구는 원예 분야의 기존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자조금 단체가 해당 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원예 분야 실태에 적합하도록 법률적고려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350호)'은 2012년 2월 22일에 공포되고 2013년 2월 23일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자조금 법 도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원예 분야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그러므로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하여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 조치,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사무국 운영비 보조, 자조금 평가

를 국내 및 해외사례,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

3. 선행연구 검토

- □ 김동환 외(2006)는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국내 품목 별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조성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또한 미국, 네덜란드 등의 자조금 단체의 기능 및 역할, 시사점 등을 파악하여 국내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 정은미 외(2008)는 파프리카 산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파프리카의 생산과 유통을 파악하고 소비자 소비실태 및 전망, 수출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생산자 단체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사업을 평가하여 파프리카 자조회 사업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음.
- □ 사)한국자조금연구원(2009)은 자조금 도입백서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자조금 도입 연혁, 배경 등을 파악하고 원예, 수산,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자조금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 최병옥 외(2010)는 품목별 대표조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28개 품목별 대표조직의 부류별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는 품목별 대표조직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영입, 자조금 조성, 정부 권한의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 이용선 외(2010)는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에서 원예자조금의 의의 및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자,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예자조금 운영실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또한 원예자조금 발전 방안으로 의무자조금의 도입가능성과 방안, 자조금 관리 운영 및 지도, 감 독 개선방을 제시하였음.
- □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 중후반에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나 주로 자조금 조성의 필요성, 해외사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 졌음.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은 원예 분야에 의무 자조금이 도입될 경우 고려사항 및 문제점을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의무자조금 시행 시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4. 연구 내용

□ 의무자조금 현황 및 문제점

- 의무자조금 현황은 원예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자조금 거출대상, 의무자조금 거출방식, 의무자조금 미납시 제재조 치, 사무국 운영, 사무국 운영비 보조, 자조금 운용 평가를 검토하였음.
 - 원예분야 의무자조금 현황파악은 각각의 항목별로 법률 현황과 국내외 자조금 단체 사례를 인용하여 파악하였음.
- 의무자조금 문제점은 원예자조금을 운영하면서 자조금 거출대상, 의무자 조금 거출방식, 의무자조금 미납시 제재조치, 사무국 운영, 사무국 운영비 보조, 자조금 운용 평가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률적인 문제 점을 파악하였음.
 - 현재 원예분야 자조금은 농협중앙회, 품목별 자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 원예분야 자조금의 문제점은 자조금 운영주체가 자조금 관련 사업을 실 시하면서 각각의 항목별로 제기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외국의 자조금 운영사례 분석

- 국내 농수산 자조금법 도입을 위하여 외국 자조금 관련 법률규정을 파악함.
 - 자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외국사례의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에서 농수산 자조금법을 도입할 때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을 제시함.
 - 외국의 자조금 운영 관련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검토 및 분석하여 국내 자조금 제도 활성화에 시사점을 제공함.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발전방안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때 핵심이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분석과정을 거쳐 의무자조금 발전방안을 제시함.
 - 원예 분야의 의무자조금 도입방안은 우리나라 원예 분야 특징을 충분하 게 고려하여 의무자조금 거취 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무자조금의 다양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함.

5. 연구 범위

- □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의 연구범위는 의무 자조금 도입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핵심이슈에 한정하여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의무자조금 시행규칙 제정방안, 의무자조금 발전방안을 제시함.
- □ 원예 자조금 관련 해외사례는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지역으로 한정함.

-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다양한 의무자조금 사례는 단기 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예 자조금 참여주체, 자조금 거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필요한 과정과 운영방식 등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의무자조금 사례는 우리나라 품 목별 자조금 단체가 중장기적으로 품목군별 통합을 지향하여 마케팅 보 드로 성장할 경우 자조금 관련 사업 개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에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음.

제 2 장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문제점

- 1.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 1.1 자조금 거출 대상
- □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조금 거출 대상인 농수산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농수산업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하고 있음.
 - 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 는 어업인.
 - 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
 - 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용, 거출금의 공정한 분 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자.

- □ 현행 원예분야에서 임의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은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임의 자조금 단체이며 참여 주체는 생산자가 아닌 일 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농협 중심의 생산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의 본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 의 자조금 단체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인식이 낮아 농협이 생산자 대신 자조금을 대납하고 있음.
 - 현재 임의 자조금 중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등에 지나지 않음.
-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수입자유화 및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원예 분야 자조금의 본연의 목적은 해당 품목을 산지단계에서 취급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 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있음.
 - 그러나 원예 분야 자조금 조성 초기 단계부터 생산자, 생산자 단체 이외에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입 업자 등이 참여하여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생산자의 이익 대변 이외에 유통, 가공, 수출입 등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구 분		채소	과실	화훼	기타
	품목 수	9	9	3	5
		2	4	3	2
부	농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파프리카, 겨울배추	시설포도, 자두, 감귤, 참다래	난, 분화, 절화	우엉, 팽이버섯
담주		7	5	_	3
체	생산자단체(농협) 거의 부담	고랭지 채소, 양파, 가지, 토마토, 참외, 딸기, 오이	사과, 배, 단감, 노지포도, 복숭아	_	친환경농업, 육묘, 인삼

표 2-1. 원예분야 자조금 부담 주체

자료: 이용선 외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에서는 품목별 자조금 단체를 구성할 때 그 목적에 따라 참여 하는 경제주체가 구성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물 위원회(Product Board)에서 자조금 사업을 주도 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규모화된 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상업농을 지향하기 때문 에 자조금 단체의 역할이 품질관리, 기술관리,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네덜란드 생산물 위원회는 자조금을 생산자, 수입 및 수출업자, 경매기 관, 유통경로 등에서 거출하고 있으며 자조금 사업이 무역제재와 정치적 문제, 원예산업 구조에 관한 통계 및 분석 결과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네덜란드 자조금 제도의 특징은 연구개발, 품질관리, 환경개선, 에너지, 기타 활동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다양함.
- 영국은 1931년 농산물 판매법(Agricultural Marketing Act)을 바탕으로 마케팅 보드(Marketing Board) 성격의 자조금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해당품

목의 생산자 및 관련기관의 참여가 의무적이었음.

- 영국의 마케팅 보드는 설립 초기에는 시장조사, 연구개발, 광고 및 소비 촉진 등의 자조금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1962년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의 시행으로 마케팅 보드가 해체되고 현재는 연구개발, 기술지도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 위주의 자조금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통 협약 및 유 통명력, 자조금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였음.
 - 미국은 1933년 농업조정법을 통하여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유통협약 및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1937년 자조금 사업의 무임승차를 배제하기 위하여 농업유통협 약법을 실시하였고 1990년 대 까지 자조금 법안이 연방의회 및 주의회 를 통하여 제정되었음.
 - 미국의 자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판매시점에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 자 등이 판매액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자조금 사업내용 은 연구개발과 소비촉진에 있음.
 - 그러나 자조금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생산자에 귀속되지 않고 유통 및 가공업자에 귀속되는 문제와 의무 자조금에 대한 일부 생산자 의 반발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음.
 - 미국은 자조금 거출 대상이 모든 생산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규모이상 의 생산자, 유통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일본의 자조금 사업은 수급조절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음.
 - 일본의 자조금 사업은 소비촉진 활동 보다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정부가 연계되어 기금을 조성하여 수급조절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 유럽 등의 자조금 제도와 다르게 소비촉진 및 홍보, 수급조절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음.

구 분 목 적 참여주체 주요활동 연구개발, 품질관리,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자, 수입 및 수출업자 네덜란드 환경개선, 에너지, 및 경쟁력 향상 경매기관, 유통기관 등 소비촉진 등 과거: 마케팅 보드 원예작물: 생산자 연구개발, 기술지도 영국 현재: 관련 산업의 연구 곡물협의회: 생산자, 등의 활동에 국한 개발 상인, 가공업자 수급 조절 등의 농업문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 연구개발, 소비촉진 미국 제 해결을 위하여 농민 업자 등 등 도 참여 판매촉진, 연구개발, 품목의 경제주체가 공익 품목의 특성 및 합의에 영국 업계의 이해 조정, 적 활동을 목적으로 함 따라 구성 정책 제언 등

표 2-2. 각 국의 자조금 제도 운영 현황

자료: 선행연구,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각국에서는 자조금 사업목적에 따라 참여주체를 구성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품목 관련 경제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은 과거 마케팅 보드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현재는 연구개발, 기술 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유통명령의 일환으로 물량규제나 품질규제가 제외된 순수한 연구 개발, 소비촉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호주의 농정은 생산자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자조금 제도를 통하여 관련 품목 참여자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 의무자조금 거출방식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의무자조금관리위 원회는 의무자조금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예분야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출 및 납부 방식이 효율적으로 결정되어야 참여주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자조금 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원예분야에서 임의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백합, 참다래, 인삼이 있으며 파프리카, 백합, 인삼은 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참다래는 수량기준으로 거출하고 있음.
 - 파프리카 자조금은 자조회 정회원이 2,000원/3.3m²을 자조회 지정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 백합은 자조금 참여 재배농가에게 직접 거출하며 거출기준은 약 667원 /3.3m²이며 자조회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 참다래는 30원/kg당을 참다래 자조회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 인삼은 3.3m²당 500원의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인삼자 조금 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가 구성된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조금 납 부방법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구성원은 대다수 자조금 거출에 대한 필요성은 인 식하지만 이것이 지불의사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금까지 국내 원예분야는 정부 정책사업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생산자 는 정책사업의 수혜자 입장이었음.
 - 원예 분야 정부 정책 사업이 주로 보조사업 및 저리 융자사업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생산자는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거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 있음.

- 아래 표는 현재 임의 자조금 중 거출액이 가장 많은 파프리카 자조회를 대상으로 이용선 등(원예작물 자조금 제도 발전방안(2010))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임.
- 설문조사 결과 파프리카 자조금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파프리카 생산자의 71.3%는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의무자조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를 나타내고 있음.

구 분 매우 부정 잘 모름 긍정 매우 구정 구정 - 구정 - 구정

10.2

44.4

26.9

표 2-3. 파프리카 자조금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견

15.7

주 1: 1점 매우 부정적에서 5점 매우 긍정적까지 5점 척도 사용

2.8

파프리카 생산자

주 2: 이용선 외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9)

- □ 국내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발달한 축산부문의 경우 의무자조금 을 도입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축산 농가 참여율이 90%로 상승하고 자조금 조성액도 크게 증가하였음.
 - 축산부문 의무자조금은 2004년 양돈, 2005년 한우, 2006년 낙농 부문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였고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자조금 조성액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음.
 - 한우 자조금 사업규모는 2011년 약 246억 원 규모에 달함.
 - 양돈 자조금 사업규모는 2011년 약 197억 원 규모에 달함.
 - 낙농 자조금 사업규모는 2011년 약 85억 원 규모에 달함.
 - 축산부문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자조금 조성 규모가 크게 증가 한 것은 자조금 거출 형태가 축산물 유통구조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 축산부문의 자조금 거출은 축산물의 1차 출하단계인 도축장에서 이루어짐.

- 양돈, 한우, 낙농 등의 축산물은 축산물 관리법에서 도축장에서 도축하 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축산물이 도축장에서 해체작업이 이루어짐.
- 축산물이 도축장을 경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축 종별로 결정된 자조금을 거출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방지 할 수 있었음.
- 축산분야는 자조금을 1년·1억 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자조금 징수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불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음.
- □ 해외에서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주로 취급 물량 및 매출액 단위로 자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자조금을 거출하는 기관은 자조금을 운영하는 협회 및 기구 또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임.
 - 미국의 자조금은 물량 단위인 톤, 파운드를 기준으로 거출하고 있음.
 - 블루베리는 12\$/톤 당 자조금을 US Highbush Blueberry Council (USHBC)이 거출하고 있으며 꿀은 1센트/파운드 당 자조금을 National Honey Board, 망고는 0.5센트/파운드 당 자조금을 National Mango Board, 땅콩은 모든 생산자 땅콩 비축량의 1%를 National Peanut Board 가 거출함.
 - 아보카드는 생산자와 수입에서 2.5센트/파운드 당 자조금을 Hass Avocado Board가 거출하고 있으며 버섯 0.005센트/파운드 당 자조금을 Mushroom council, 감자 3센트/100파운드 당 자조금을 U.S Potato Board, 수박 3센트/100파운드 당 자조금을 National Watermelon promotion Board에서 거출하고 있음.
 - 뉴질랜드 자조금은 주로 취급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음.
 - 과수 자조금은 1.5\$/10,000\$ 당을 NZFF에 지불(2012)하고 있음.
 - 채소 자조금은 45\$/10,000\$가 징수되어 그 중 30\$는 생산자 단체에, 15 \$는 NZ에 지불하고 있음.
 - 영국의 자조금은 매출액 또는 취급물량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음.

- 원예제품 생산자는 매출액의 0.50%, 감자는 생산자가 ha 당 42.62파운 드, 구매자가 0.1858파운드/톤 당을 지불함.
- 호주의 자조금은 취급물량 대비 징수되며 자조금 거출기관이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체적 관리는 농어임업성의 자조금 관리국이 담당하고 있음.
 - 호주는 자조금을 거출하는 기관이 Horticulture Australia Limited(HAL), National Residue Survey(NRS), Plant Health Australia(PHA) 3곳이 있음.
 - 배와 사과는 원물과 가공 형태에 따라 자조금이 부과됨. 국내용 및 수출용 사과는 각각 1.845센트/kg, 배 2.099센트/kg가 징수됨. 주스용으로 가공되는 사과는 \$2.95/톤, 배\$2.95/톤, 퓨레 등으로 가공되는 사과\$5.5/톤, 배\$2.05/톤이 징수됨.
 - 아보카드는 원물에 7.5 센트/kg, 가공 \$0.01/kg가 징수되어 HAL, NRS 에 지불됨.
 - 바나나는 \$0.017/kg가 생산자로부터 징수되어 HAL, NRS에 지불됨.
 - 생강은 생산자가 판매 가격의 0.5%를 지불함.
 - 꿀은 국내용이 2.3%/kg, 수출용이 2.3%kg징수되어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RIRDC), NRS에 지불됨.

구 분 자조금 징수 기준 자조금 거출 기관 매출액 또는 취급물량 대비 자조금 협의회 또는 위원회 성격의 보 미국 징수 드에 귀속됨 원예 품목의 생산자 대표조직 및 단체 뉴질랜드 매출액 대비 징수 에 귀속됨 매출액 또는 취급물량 대비 농업원예개발위원회(AHDB)의 각 부서 영국 징수 에 귀속됨 품목의 특성에 따라 3곳(HAL, NRS, 호주 대다수 취급 물량 대비 징수 PHA)의 자조금 관리 단체에 귀속됨

표 2-4. 자조금 징수 기준 및 거출기관

자료: 연구자가 각국의 자조금 단체 홈페이지, 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함.

- 일반 채소류는 국내용이 판매 총액의 0.5%를, 수출용이 FOB(Free on Board)의 0.5%를 HAL, NRS, PHA에 지불함.

1.3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 □ 해외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주체는 자조금 거취 대상인 생산자 및 유통업자, 수출입 업자 등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 등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음.
 - 의무 자조금 단체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제주체에게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자조금을 거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 당 품목의 경제주체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임.

표 2-5.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의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사항

구 분	자조금 미납시 제재조치
미국	1차: 농림부장관 경고 2차: 농림부장관에게 자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진술할 기회 제공 3차: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지 못한 경우에 1,000\$이상 10,000\$미만의 벌 금 부과
뉴질랜드	1차: 자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 2차: 10,000\$ 이하의 벌금 부과
호주	1차: 자조금 미납 첫 달은 미납자조금 액수의 2%가 벌금으로 부과 2차: 첫 달의 2% 벌금을 포함하여 미납자조금 합계액의 2%가 누진적으로 부과
영국	자조금 미납자에게는 레벨 5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형법으로 정해진 벌칙으로 레벨 5가 최고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이며 레 벨 5는 5,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자료: 연구자가 각국의 자조금 단체 홈페이지, 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함.

- 미국은 자조금을 미납하였을 때 1차로 농림부장관의 경고장이 발송되며 자조금 납부자가 경고장을 받고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2차로 농림부장관에게 자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짐. 3차에서는 소명기회를 근거로 자조금 납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지 못한 경우에 1,000\$이상 10,000\$미만의 벌금을 부과함.
- 뉴질랜드는 1차로 자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하고 자조금 납부 대상자가 이를 묵인할 경우에는 1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호주는 자조금 납부대상자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첫달은 미납 자조금액수의 2%가 벌금으로 부과됨. 그래도 자조금 납부 대상자가 지 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달의 2% 벌금을 포함한 미납자조금액의 합계 액의 2%가 벌금로 부과됨.
- 영국은 위반자에게 레벨 5(형법으로 정해진 범칙금을 납부하는 레벨 수준이며 레벨 5가 최대 레벨, 레벨 5=5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1.4 사무국 운영 현황 및 역할

- □ 농수산자조금 운영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는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의무자조금 단체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의무자조금 사무국은 경우에 따라서 자조금 거취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생산자 교육, R&D의 추진, 홍보 및 광고,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의무자조금 단체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음.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거취는 자조금 단체의 공익적 활동, 시장개척 참여주체의 경제적 이익 보장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무국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
 - 의무자조금 단체 활성화는 의무자조금 단체 활동의 여하에 따라 성장 및 쇠퇴할 수 있으므로 사무국의 활동분야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 며 의무자조금 의결기관인 총회, 대의원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분 리되어 운영될 수 있어야 함.

1.5 사무국 운영비 보조

- □ 농수산자조금 운영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는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사항이 명기되어 있음.
 - 이 조항의 세부사항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 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자조금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 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법 17조 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의 100분의 8을 사용할 수 있으며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을 규정하고 있음.

표 2-6. 연도별 파프리카 자조금 조성 및 참여 농가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자체 부담금	정부보조금	합 계	자조금 납부 농가 수
2000년	24,324	18,480	42,804	12
2001년	119,464	103,060	222,524	13
2002년	59,171	59,171	118,342	16
2003년	154,794	154,794	309,588	14
2004년	249,000	249,000	498,000	18
2005년	386,627	386,627	773,254	272
2006년	1,050,042	1,050,000	2,100,042	348
2007년	1,500,000	1,500,000	3,000,000	441
2008년	1,664,000	1,664,000	3,328,000	477
2009년	1,693,615	1,693,615	3,387,230	504
2010년	889,540	889,540	1,779,080	500
2011년	923,758.5	923,758.5	1,847,517	517

자료: 파프리카 자조금 사무국(2012)

- □ 현재 임의자조금 중 운영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파프리카의 경 우 2011년 자체 부담금이 약 924백만 원이며 정부 보조금까지 합 산한 경우 약 1,780백만 원임.
 - 파프리카 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될 경우 자체 조성금이 924백만 원이므로 의무자조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약 924십만 원을 사 용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총액 개념으로 산출할 경우 100분의 8 비율이므로 약 142백만 원의 금액을 활용가능.

표 2-7. 파프리카 자조금 사무국 2011년 운영비

사업명	집행액	산출내역
회의비	23,937,842	총회: 14,795,410 - 출장비: 11,600,600=200천원×58명 - 회의진행비: 3,195,410(회의장 임대 및 부대비용) 기타회의: 9,142,432원 - 출장비: 8,200,000=200천원×42명 - 회의 진행비: 942,432원(회의장임대 및 부대비용)
수용비	44,152,687	복합기 사용료: 2,431,000 소모품 구입: 4,732,908(사무용품, 비품 등) 비상근 임직원 출장비: 19,035,179 화환 및 기타비용: 909,500 사업 성과평가 용역대금: 9,462,000 업무추진비: 7,582,100(책자 발간비)
수수료	44,085,575	사무실임대료(12개월): 10,401,475 원천세 및 보험료(12개월): 22,205,320 세무회계 및 노무사 수수료(12개월): 2,266,000 은행 및 기타 수수료: 5,858,510 통신비: 3,354,270
인건비	151,784,763	사무국 직원 5명 인건비 및 퇴직금
합계	263,960,867	_

자료: 파프리카 자조금 사무국(2012)

□ 2011년 파프리카 자조금 사무국 운영비는 회의비, 수용비, 수수 료,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약 264백만 원에 달함.

- 현재 파프리카 자조금 사무국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사무 국장 1명, 직원 4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음.
 - 파프리카 자조금은 정회원 기준으로 평당 2,000원의 자조금을 거취하고 있으며 거취 대상도 생산자에 국한되고 있음.
 - 파프리카 자조금의 경우 임의자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자조금 사무국 운

영비를 자체부담금 대비 약 28% 사용하고 있으며 총액 대비 약 14.2% 를 사용하고 있음.

□ 호주는 자조금 거취 대상자가 납부한 자조금에 연방정부의 보조 금(Matching Funding)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PIERD(The Primary Industries and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989)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호주 연방정부의 자조금 보조 규모는 해당 품목의 연간 총생산액의 0.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 연간 총생산액은 매년 에너지 분야의 장관에 의해 확정됨.

표 2-8. 호주의 의무자조금 조성 규모 및 정부보조 현황

호주의 의무 자조금 단체	자조금 (백만\$)	정부 보조금 (백만\$)
Cott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4.58	5.68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17.29	9.18
Grain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63.00	47.10
Grape and Wine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11.21	12.28
Land & Water Australia	_	_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2.44	13.50
Sugar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3.85	4.80
Australian Egg Corporation Limited	5.92	1.58
Australian Pork Limited	10.82	4.33
Australian Wool Innovation	47.03	11.34
Dairy Australia	33.10	18.79
Forests and Wood Products Australia	5.22	4.42
Horticulture Australia Limited	37.64	42.91
LiveCorp	3.86	_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96.10	40.30

자료: 호주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RDCs(2012)

1.6 자조금 운용 평가

- □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르면 자조금 의 운용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한정하고 있음.
 - 법률 제 31조 1항은 의무자조금 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 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 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 자조금 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사단법인 연구소 및 컨설팅 업체에 자조금 운용에 관련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지만 자조금 사업과 관 련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파프리카 자조금 단체는 과거 사단법인 연구소 및 컨설팅 업체에 2천만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하여 자조금 운용 평가를 위탁하였지만 평가항목, 연구내용, 분석방법 등의 부분에서 전문성이 뒷받침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음.
 - 자조금은 공익적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이므로 자조금 사업에 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 그러나 원예 분야 자조금 단체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에 자조금 사업에 대하여 공정하 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 □ 의무자조금 제도가 활성화 된 미국은 USDA(United Stated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매년 7월 1일까지 자조금 사업의 실시 상황, 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상하 양원 농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임.

- 자조금 사업 평가에 관한 분석은 코넬 대학이 위탁연구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은 자조금 사업 평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USDA 직원 인건비, 여비 등)도 자조금에서 지출하고 있음.
- □ 미국에서 자조금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NICPRE(National Institute on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Evaluation), CCPRP(Cornell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Program), NEC-63 3곳이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NICPRE 는 연방정부 및 주의 자조금 프로그램이 내수 및 수출 수요와 관련된 각 종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관이며 코넬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 자조금의 다양한 공익적 사업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자조금 프로그램 과 수출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을 계속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함.
 - 2. 자조금 위원회의 책임자 및 자조금 프로그램의 감독관에게 자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있음.
 - 자조금 평가는 코넬대학을 중심으로 몇 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음.
 - 자조금 평가내용은 유제품의 판매촉진 활동 및 관련 활동의 경제 효과, 쇠고기의 판매촉진 활동(수출)에 대한 경제적 평가, 자조금 프로그램(대 표단체)의 경제성 평가, 면업의 자조금 프로그램 경제성 평가임.
 - CCPRP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1. 농민, 소비자, 식품업계의 국내 및 수출 관련 상품 진흥프로그램을 평가함.
 - 2. 자조금의 연구와 평가에 관련된 포괄적인 데이타 베이스 개발.
 - 3. 상품별, 국가별로 실시하는 자조금 관련 연구 및 평가의 제휴 강화 촉진.
 - 4. 자조금 프로그램의 경제학적 방법론 개발과 공공 및 민간의 정책담당 자의 이해를 높이는 새로운 이론과 연구 방법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NEC-63은 1985년에 설립되어 학자, 정부관계자, 관련 산업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상품의 광고 및 판매촉진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음.
 - NEC-63은 NICPRE, CCPRP와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조금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2.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문제점

2.1 자조금 거출 대상

- □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조금 거출 대상은 가, 나, 다 항을 고려할 경우 생산자, 협동조합인 농협, 생산자 법 인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라' 항을 고려하면 유통업자, 수출입업자, 가공업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우리나라의 원예 자조금은 생산자, 유통업자, 수출입 업자, 가공업자 등에 게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자조금을 거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큼.
 - 현재 원예 분야에서 대표조직 및 임의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자조금 거출 방식은 품목 생산자가 아니고 대부분 지역 농협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임.
 - 또한 원예 분야 대다수 품목에서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 이외에 유통업 자, 수출입 업자, 가공업자의 자조금 단체 참여가 낮은 상태임.

표 2-9. 의무자조금 참여 주체에 따른 장·단점

	생산자 위주의 의무자조금 단체	생산자, 유통업체, 가공업체, 수출입 업체 등을 포함한 의무자조금 단체
장점	 생산자 위주의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이 용이하고 참여주체 간 갈등의소지가 적음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 체계 구축이 용이함 생산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사업추진이 용이함 	 다양한 분야의 경제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 규모가 큼 소비촉진 및 홍보, R&D, 유통협약, 내수 및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한 자조금 사업이 용이함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용이함
단점	■ 생산자 위주로 자조금을 거출하기 때문에 자조금 규모가 적음 ■ 생산자가 거출한 자조금으로 소비 촉진 및 홍보 활동을 할 경우 다양 한 경제주체(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의 무임승차가 발생함 ■ 의무자조금에 참여 하는 생산자 규모 및 방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이 어려움 특정 경제주체가 많은 자조금을 부담할 경우 자조금 사업이 특정 경제주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음 의무자조금 단체가 설립되더라도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자료: 연구진이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외국과 같은 경우는 자조금 제도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주체가 연구개발, 소비촉진, 기술지도, 수급조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원예 분야의 경우 품목별 자조금 사업의 목적을 단기 및 중장기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및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원예 분야의 경우 자조금 제도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에 대한 생산자의 의식이 부족함. 실례로 과거 품목별 대표조직 추진

시에 많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납부하면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자조금이 제대로 거출되지 못하여 농협중앙회에서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조금 제도 실행이 생산자 참여가 미비한 상태에서 유통업자, 수출입업자, 가공업자, 대형 소매점 등이 참여하게 되면 미국 사례와 같이 자조금 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이 생산자에 귀속되기 어렵고 참여 주체 간 갈등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2.2 의무자조금 거출방식

- □ 원예분야는 축산물과 다르게 유통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통분 야에서 자조금을 거출한다는 것은 무임승차, 거출기관 선정 등에 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원예분야의 유통경로는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직거래, 식자재 및 가공 업체 등이 있고 노지채소의 경우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의 포전매매가 활 발함.
 - 아래 표에서는 생산자가 유통 경로별로 출하하는 비중이 나타나 있음.
 - 생산자는 산지유통조직에 67.8%를 출하하고 산지유통인에 25.8%를 출하함.
 - 산지유통조직은 도매시장에 31.2%를 출하하고 대형유통업체에 12.9% 등을 출하하며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에 15.9%를 출하함.
 - 도매시장은 전체 신선청과물의 50.8%를 취급하고 소비지 분산처는 가 공 및 외식, 단체급식, 전통시장, 식자재 유통업체 등임.
 - 국내 청과물 유통에서 가장 많은 취급량을 담당하는 곳은 청과물 물량의 1차 수집처인 농협과 법인을 포함한 산지유통조직 67.8%이며 그 다음 순으로는 도매시장 50.8%임.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을 산지유통 단계에서 부과할 경우 생산자 중

67.8%만 자조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32.2%는 무임승차하게 됨.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을 도매시장 단계에서 부과할 경우 출하자 중 50.8%만 자조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49.2%는 무임승차하게 됨.
- 원예 분야는 축산분야와 다르게 산지유통 단계에서 모든 물량이 한곳에 집중되지 못하므로 유통단계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원예 분야는 유통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조금 납부 방식이 어려워 파 프리카, 백합, 인삼은 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참다래 는 수량기준으로 거출하고 있음.
 - 원예분야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자조금 납부가 면적 및 수량기준으로 거출될 경우 생산자가 재배하는 작목을 전환하게 되면 자 조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생산자 를 대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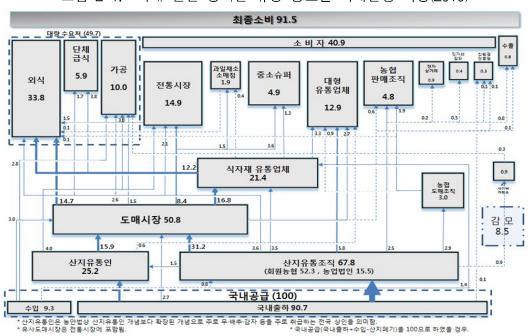


그림 2-1. 국내 신선 청과물 유통 경로별 거래물량 비중(2010)

자료: 박하나(2012), 신선청과물 유통규모 및 유통경로 추정, 농식품신유통연구원 84차 토론회 자료. 74P

- 이들 품목은 현재까지 임의 자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자조금 납부 독촉'이외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음.

2.3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설정

- □ 우리나라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는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경제주체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원예 분야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생산자가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도입이 용이하지 않음.
 - 특정 품목에서 자조금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동의를 얻어 의무자조금을 도입 및 시행할 경우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제주체에 법률적 제재를 가할 경우 의무자조금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과 같은 경우도 법률적 근거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였지만 의무자 조금 도입에 반대하는 경제주체가 소송 등을 통하여 의무자조금을 납부 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은 다양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법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최 근 일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패소하면서 의 무자조금에 대한 법률적 당위성이 보장되고 있음.
- □ 원예 분야 특정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경우 자조금을 납부하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조금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자조금 납부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법률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도입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제 재조치를 시행 할 경우 미국과 같이 자조금에 반발하는 경제주체가 '자조 금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장기적인 법률적 소송에 휘말려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의무자조금에 찬성하는 경제주체와 반대하는 경제주체가 법률적 소송을 벌이게 될 경우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등에서 의무자조금에 대한 당위성 및 타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3~4 년의 시간이 소요됨.
 - 또한 의무자조금 징수 관련 소송기간 동안은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부분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됨.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더라도 자조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 조금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국내 축산분야는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도축장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실시하거나 자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음.
 - 축산분야의 자조금 제재조치는 2010년부터 실시되었고 제재조치를 실시하기 이전에 자조금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음.

2.4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 과거 원예 분야 품목별 대표조직을 운영할 때 사무국 운영이 농협 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 는 임의 자조금 단체가 그대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대표조직 사무 국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 품목별 대표조직에 참여한 많은 농협은 임의 자조금 단체와 품목별 대표 조직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타 생산자 단체(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소극적이었음.
 - 지역 및 품목 농협의 자조금 납부는 이사회를 통하여 의결을 거친 뒤 조합장 개인 자금이 아닌 농협 경제사업 자금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영농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대표가 법인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품목별 대표조직에 참여하는 농협은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일반 법인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자조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의무와 권한(의무: 자조금 납부, 권한: 자조금을 납부 한 법인만 회원으로 인정)을 강조하였음.
- 또한 품목별 대표조직 사무국은 농협 직원 1명에서 2명으로 구성되었고 사무국 직원이 전국에 산재된 법인을 대상으로 자조금 납부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조금 납부에 대한 원칙과 의무만 강조하였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자조금을 납부하면서 까지 참여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품목별 대표조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
- 그 후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원예 분야 품목별 대표조직은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참여가 미비하여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경영이 어렵고 사무국 운영비용의 정부지원 중단 등이 예고되자 농협중앙회 사무실로 철수하였음.

□ 의무자조금 단체가 설립될 경우 사무국이 특정 생산자 단체 위주 로 운영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의무자조금은 법률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당 품목의 자조금 납부 대상자 2/3이상이 투표하고 2/3이상이 찬성하여야 함.
 -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한 이후 사무국이 농협중앙회에 소속되어 임의 자조금 단체나 품목별 대표조직과 같이 운영된다면 의무자조금에 참여 하는 법인 및 여타 경제주체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됨.
 - 또한 의무자조금 단체가 현재와 같이 사무국이 농협중앙회 분리되지 못하고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조합장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사무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농협 위주로 실시될 수 있음.

- □ 의무자조금 단체가 설립되면 사무국 운영은 특정 참여주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조금 총회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의무자조금 사무국은 자조금 의결기구인 총회,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회장 및 임원과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조금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행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운영하는 직원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직원 위주로 배치되어야 사무국 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 과거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던 품목별 대표조직 사무국 직원은 농협의 퇴직자를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행정능력은 확보할 수 있 었지만 대표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단체 사무국 직원은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직원 위주로 선발되어야 의무자조금의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2.5 사무국 운영비 보조

- □ 원예 분야 자조금은 자조금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한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품목은 드문 실정임.
 - 자조금 단체가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초기에는 자조금 거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의무자조금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므로 의무자조금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원예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더라도 모든 자조금 납부 대상자가 초기부터 자조금을 100% 완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에는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므로 자조금 규모가 커질 때까지는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소요되

는 비용을 자체 조성금액이 아닌 정부 보조를 포함한 총액 대비로 산정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6 자조금 운용에 대한 평가

- □ 자조금은 주로 연구개발,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움.
 - 자조금 단체가 유통사업을 직접 실시할 경우에는 투입비용 대비 매출액, 영 업이익율 등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자조금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용이함.
 - 그러나 자조금 사업은 특정 경제주체의 이익보다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소비촉진 및 홍보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 자조금 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연구개발, 소비촉진 및 홍보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및 분석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필요함.
- □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서 연구개발, 소비촉진 및 홍보 등 자조금 평가와 관련된 평가를 전문기관 및 대학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5천 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용역비용이 필요함.
 - 현재 임의 자조금 단체는 자조금 운용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조금 평 가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큼.
 - 자조금 단체 규모가 커서 연구 용역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경우에 는 국책연구기관, 국립 및 사립대학 등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자조금 운용 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사업비도 여유가 없어 인력채용, 각 종 경비 등의 지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조금 운용 평가와 관련 된 비용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까지 책정하기가 어려움.

제 3 장

자조금 해외사례

- 1. 미국의 자조금 제도
- 1.1 자조금 제도 도입 배경
- □ 미국은 1990년대까지 각종 농산물 품목별 유통 명령, 자조금 법안 이 연방위원회와 주로 의회를 통해 제정되었음.
 - 그러나 생산자에게 자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 요했고 연방정부 또는 자조금 단체마다 독립적인 자조금을 실시하고 있 었기 때문에 자조금 징수금액이 통일되지 않았음.
 - 당시 미국의 자조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생산자도 자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하였음.
 - 1996년 모든 농산물 자조금을 창설한 근거가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로 제정된 후부터는 동법에 따라 자조금 제도를 법률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가능 해졌음.
 - 현재에는 전체 18개 품목의 자조금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각 업계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고 각 업계가 자발적으로 소비 확대

에 노력하고 있음.

- □ 미국의 자조금 제도의 실시에 대해서 일부 생산자가 반발하여 법률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2005년 자조금 제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
 - 미국 대법원은 2005년에 자조금 제도는 "Government Speech"에 대한 납부를 의무화 것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홍보 활동에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자조금 제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1.2 자조금 제도의 특징

- □ 미국의 자조금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농산물의 판매 촉 진 및 연구 개발의 진흥과 지식 보급 등을 실시함.
 - 자조금 조성 품목의 활동은 주로 아이들에 대한 영양 교육과 조리 방법 소개,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상품 개발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짐.
 - 미국의 자조금 프로그램은 특정 기업의 제품 등에 한정한 소비 확대 활 동은 할 수 없다는 것임.
- □ 미국의 자조금 사업은 농무부(USDA) 소속의 "Guideline for AMD Oversight of Commodity Research and Promotion Programs"에서 자조금 용도, 용도의 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USDA는 지침에 따라 자조금 사업을 관리 및 감독함.
 - 블루베리를 포함한 규모가 작은 6 개 품목(꿀, 양고기, 망고, 땅콩, 옥수수)는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어있음.

- 13개 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음.
 - Beef Research and Promotion ACT(7 USC 2901-2911)
 - Cotton Research and Promotion ACT(7 USC 2101-2118)
 - Dairy Production Stabilization ACT of 1983(7 USC 4501-4514)
 - Egg Research and Promotion ACT(7 USC 2701-2718)
 - Fluid Milk Promotion ACT(7 U.S.C 6401-6417)
 - Hass Avocado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7 USC 7801-7813)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7 USC 6101-6112)
 - Popcor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7 USC 7481-7491)
 - Pork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7 USC 4801-4819)
 - Potato Research and Promotion ACT(7 USC 2611-2627)
 - Soybea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7 USC 6301-6311)
 - Watermelon Research and Promotion ACT(7 USC 4901-4916)
 -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7 USC 7401)

□ 미국의 자조금 법률은 의회에 의해 결정되고 자조금 법률과 관련된 규칙은 자조금 거취대상자의 투표로 결정됨.

- 투표의 실시는 낙농 자조금의 경우 생산자의 10%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며 우유 자조금은 제조업자(음용 우유 판매량 베이스)의 10%이상 의 요구에 의해 실시됨.
 - 낙농 자조금 제도의 규칙은 생산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우유 자조금 제도의 규칙은 제조업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음용 우유 판매량 베이스로 4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USDA는 자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음.

- USDA는 담당관을 이사회 등에 출석시켜 기획, 입안, 승인 등의 여러 가지 자조금 사업이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함.
 - 또한 자조금이 소비확대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 확대의 내용, 표현 등에 문제가 없는가 등의 감시를 실시하고 있음.
- USDA는 매년 7월 1일까지 자조금 사업의 실시 현황, 평가 등에 대해서 상하 양원 농업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
 - 자조금 사업의 효과 분석은 낙농분야의 경우 코넬대학이 위탁을 접수 실시하고 있어, 음용 우유의 소비량, 우유·유제품의 소비량을 각각 지표로한 계량 경제 분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USDA는 자조금 제도 감시와 관련되는 직원 인건비나 감시를 위한 비용 등의 경비를 자조금에서 충당하고 있음.

1.3 자조금 거취 방법

- □ 미국의 자조금은 대부분 물량대비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 취대상은 품목에서 결정하지만 대부분 생산자와 수입업자이고 자 조금 거취 금액은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자조금 거취 기관은 개별 품목에서 정한 Council, Board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 블루베리는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12\$/톤 징수되며 자조금 사업 실시 주체는 US Highbush Blueberry Council(USHBC)에서 담당하고 있음.
 - 꿀은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1센트/파운드 징수되며 사업 실시 주체는 National Honey Board가 실시함.
 - 망고는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0.5센트/파운드 징수되며 사업 실시 주체는 National Mango Board가 실시함.
 - 땅콩은 생산자의 땅콩 비축량의 1 %가 징수되며 사업 실시 주체는

National Peanut Board가 실시함.

- 쇠고기는 판매자가 소를 거래 할 때마다 1두당 1달러가 징수되며 사업 실시 주체는 전국 수준에서 Beef Board가 담당하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쇠고기 협의회가 있음. 또한 전국 쇠고기 보드는 자조금 사업의 사업 계 획 등을 수립하는 '쇠고기 프로모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있음.
- 우유는 생산자에게 100파운드 당 15센트, 수입업자에게는 수입 유제품에 원유 환산으로 100파운드 당 7.5센트가 징수되며 사업 실시 단체는 전국적 수준에서 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Dairy Board)와 지역 단체가 있음. 또한 Dairy Board와 United Dairy Industry Association(UDIA)에 의해 공동 설립된 전국 규모의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는 조직으로 Dairy Management Inc(DMI)가있음. 수입단체 중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는 2개의 단체가 있음. 생산자로에게 징수되는 15센트 중 5센트는 Dairy Board, 나머지 10센트는 지역 단체에 배분되며 수입업체가 지불하는 7.5센트의 자조금은 Dairy Board 5센트, 수입업자 단체에 2.5센트 지급 됨.
- 아보카드는 생산자와 수입에서 2.5센트/파운드당 징수되며 사업 실시 단체는 Hass Avocado Board임.
- 버섯은 생산자에게 0.005센트/파운드가 징수되며 사업 실시 단체는 Mushroom council임.
- 감자는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3센트/100파운드 징수되며 사업 실시 단체는 U.S Potato Board임.
- 수박은 생산자가 3센트/100파운드 당, 수입업자가 6센트/100파운드가 징수되며 사업 실시 단체는 National Watermelon promotion Board임.

2. 영국

2.1 영국의 자조금 제도 도입 배경

- □ 2006년 자조금 제도 도입에 관한 선언에 따라 2008 년 4 월 1 일, 농업 관련 5 개 단체(the British Potato Council, the Meat and Livestock Commission, the Milk Development Council, the Hort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and the Home Grown Cereals Authority)가 신설되었음.
 - 영국은 자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하여 농업·원예 개 발위원회(AHDB: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가 2008년 4월 1일 설립되었음.
 - 영국은 지금까지 해당품목의 자조금 단체가 개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AHDB가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현재 AHDB에는 6개의 부서와 British Pig Executive(BPEX) English Beef & Lamb Executive(EBLEX), Dairy Co, Home Grouwn Cereal Authority(HGCA) Horticulture Hare Development Council(HDC), British Potato Council(BPC)가 있음.
 - AHDB는 정부가 설립한 단체가 아닌 농업인, 생산자 등의 자조금에 의해 설립된 단체임.

2.2 자조금 제도의 특징

□ 생산자에게 징수된 자조금은 AHDB 각 부서(BPEX, EBLEX, HGCA, Dairy Co, HDC, BPC)에 회수됨.

- 영국의 AHDB와 각 부서와 관계는 AHDB가 각 부서를 총괄하고 있으며 상호 견제의 원칙에 따라 각 부서에서 자조금과 관련된 이익이 독점되지 않고 이익 공유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자조금 제도로 설립된 AHDB의 주요 목적은 영국 농업을 경쟁력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 자조금 납부자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함.
 - 2. 자조금 납부를 통하여 해당 품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킴.
 - 3. 해당 품목의 소비자 인식을 증대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의 실시.
 - 4. 해당품목과 관련된 경제주체 및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향상킴.
 - 5. 해당품목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함.

2.3 자조금 거취 방법

- □ 영국은 2012년 4 월 1 일부터 2013 년 3 월 31 일까지 책정할 자조금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축산 분야의 경우 생산자와 도축장, 수입업 자가 지불하며 곡물 및 유채는 생산자, 판매자, 가공업자, 원예분야는 생 산자 또는 구매자가 지불하고 있음.
 - 돼지고기는 생산자 £ 0.85/마리, 도축장 및 수입업자 £ 0.20/마리가 징수 되어 BPEX에 지불됨.
 - 쇠고기는 생산자 £ 4.05/마리, 도축장 및 수입업자 £ 1.35/마리가 징수되어 EBLEX에 지불됨.
 - 송아지는 생산자 £ 0.08/마리, 도축장 및 수입업자 £ 0.08/마리가 징수되어 EBLEX에 지불됨.
 - 양고기는 생산자 £ 0.60/마리, 도축장 및 수입업자 £ 0.20/마리가 징수되

- 어 EBLEX에 지불됨.
- 우유는 중매인 및 직매인이 0.06펜스/리터가 징수되어 Dairy Co에 지급됨.
- 곡물 및 유채는 생산자 46펜스/톤, 판매자 3.80펜스/톤, 가공업자(식품 및 산업용) 9.50펜스/톤, 곡물 가공업자(사료용) 4.60펜스/톤, 유채 75펜스/ 톤이 징수 되며 HGCA에 지불됨.
- 원예는 생산자 0.50%/전체 매출액, Agaricus 버섯은 생산자 8펜스/리터, Agaricus 이외의 버섯 생산자는 2.0펜스/리터가 징수되고, HDC에 지불됨.
- 감자는 생산자 £ 42.62/ha, 구매자 £ 0.1858/톤이 징수되어 BPC에 지불됨.

3. 네덜란드

3.1 네덜란드의 자조금 운영 체계

- □ 네덜란드는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복수의 기업(비영리도 포함)에대해서 공적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해져 있음.
 - 이러한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직적 계열화를 촉진하는 것임. 생산 관리기구는 Commodity broad로 불리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것 은 Industrial boad로 명명하고 있음.
 - 양 관리 기구는 「산업계의 세무서」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해당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산자, 기업 등은 반드시 등록되어 자조금을 지불하여야 함.
 - 거출된 자조금은 공동 연구나 공익을 도모하는 정책, 프로모션 활동 등 에 사용됨.
 - Commodity broad와 Industrial boad는 네덜란드의 사회경제 위원회 (Sociaal-Economische Raad: SER)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음. 이 기구는 각 기관의 대표가 임명되는 정책의 자문기관이며 양 관리 기구는 SER의 감독하에 있어 이사의 임명도 SER가 담당하고 있음.

- □ 생산관리 기구는 각 품목마다 11개의 조직이 있으며 생산관리기 구가 설립되기 전에는 생산자 차원의 자조금 조직은 있었지만 유 통 및 산업계와 연계성이 없었음.
 - 생산관리기구의 설립에 의해 생산·판매의 쌍방이 같은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생산관리기구는 발농사 작물(General Commodity Board for Arable Products), 곡물, 종자, 두류(Commodity Board for Grains, Seeds, and Pulses), 동물 사료(Commodity Board for Animal Feed), 음료 (Commodity Board for Beverages), 육계와 계란 등(Commodity Board for Poultry and Eggs), 유지류(Commodity Board for Margarine, Fats and Oils), 원예작물(Commodity Board for Horticulture), 가축과 육류 (Commodity Board for Livestock and Meat), 어류(Commodity Board for Fish and Fish Products), 와인(Commodity Board for Wine), 낙농 (Commodity Board for Dairy Produce) 임.

□ 네덜란드 생산관리 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생산관리 기구는 원예 생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원예 생산 관리기구(Productschap Tuinbouw, PT)임.
 - 생산관리 기구는 원예와 관련된 산업조직 및 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적인 조직으로 1956년 설립되었음.
 - 생산관리 기구의 사업 목적은 원예 업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익을 촉진하고 각각의 조직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임.
 - 생산관리 기구(Productschap) 11개 조직 가운데 원예분야 생산관리 기구의 규모가 가장 큼. PT는 1996년에 「야채와 과일」, 「관상용 식물」로 구성되었지만 이들이 통합되어 현재의 생산관리 기구가 탄생하였고 화초, 수목, 구근, 조원, 야채와 과실, 에너지의 분야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생산관리기구 이사는 사회경제 심의회(SER)로부터 임명되며 PT의 편성 도 법률로 정해져 있어 1.관상용 화초, 2.수목·다년생 직물, 3.구근, 4.야

채·과실, 5.조원, 6.에너지의 6개의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음.

□ 네덜란드의 산업관리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네덜란드 산업관리기구는 모두 6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공업은 General Industry Board for Skilled Trades임.
 - 소매업은 General Industry Board for Building Completion and Maintenance임.
 - 정비업은 General Industry Board for Building Completion and Maintenance임.
 - 농업 도매업은 General Industry Board for Wholesale Agriculture임.
 - 요식업은 Industrial Board for Hotels and Catering임.
 - 삼림업은 Board for Forestry and Silviculture임.

□ 산업관리기구에서 농업 도매업(HBAG)은 1957년에 설립되었음.

- 농업 도매업 분야는 시장의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되었지만 각 업계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음.
 - HBAG는 농업 전반의 도매업의 연맹이고 4개의 전문 위원회(절화, 하치물, 야채, 과일, 식용 감자, 종 감자)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경제 심의회(Sociaal-economische Raad)는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생산관리 기구와 산업관리기구의 자문기관임.

- SER은 네덜란드 산업 조직법에 근거하고 경제 정책의 계획 및 조언 등의 기능을 가지는 상설 심의 기관으로 의무 자조금 기구 중 가장 핵심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
 - SER 심의의 주요 내용은 중기의 경제정세 분석, 경제·산업구조, 시장 정세에 맞은 정책, 사회 보장 제도 등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SER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관행임.

3.2 네덜란드 자조금 특징

□ 생산관리기구가 거취하는 자조금

- 생산관리기구는 자조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한 자조금을 생산관리 기구 내부 위원회에 배분하고 자조금의 사용 방법이나 종합적인 방향성 및 비 전은 위원회에서 결정함.
 -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화초 산업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PT에 의해 자조금이 부과되고 해당 위원회의 예산으로 사용됨.
 - PT의 각 위원회는 각 업계 단체의 대표자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업계 단체 및 참여 기업, 관련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의 의견 일치를 얻은 후 실시됨.
 - 또한 PT에서 결정된 사항은 SER를 통해서 정부의 시책에도 반영됨.
 - PT의 주된 활동 내용은 1.프로모션 활동 2. 사회 분야 연구 3.경제 분야 연구 4. 기술 분야 연구 5. 환경과 관련된 사항 6. 품질과 관련된 사항 7. 원예 생산관리 기구의 조직운영 비용 8. 그 외 프로젝트 임.
 - PT의 각 위원회는 프로모션 활동비, 조사 활동비, 환경 문제 대책마련과 관계된 비용, 에너지와 관련된 대책마련 비용으로 사용됨.
 - 2008년는 약 8,300만 유로 중, 약 3,000만 유로가 프로모션비로 각 단체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대학 등)이나 환경에 관한 사항에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프로모션 비용은 각각의 품목에 따라서 전문 프로모션 기관에 배분됨.

□ 산업관리기구가 거취 하는 자조금

- 산업관리기구의 자조금 사업내용은 다양하지만 주로 통계의 작성, 채무 정보 작성 등이 핵심 사항임.
 - 산업관리기구의 주요사업 내용은 1. 산업의 정보 데이터 등 소집, 분석, 제공 2. 대금 회수에 관한 서비스 3. 각종 정보 제공, 조언(신용 관리, 사

회 방침, 품질관리, 자동화, 경영 등) 4. 정보 통신 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보급 5. 비즈니스 매칭 6.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 및 로비 활동임.

- 산업관리기구 내의 농업도매업(HBAG) 분야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구 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모든 도매업자는 등록이 강제되어 있음.
 - 수출업자는 상공회의소와 HBAG에도 등록해야 함.
 - 도매업자는 의무자조금 청구서와 납부 증명서를 복사하여 HBAG에 제출해야 하고 PT는 HCAG 대리로 서류 관리를 실시함.
 - PT는 자조금 납부 대상자가 자조금을 정당하게 지불했는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생산자나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3.3 네덜란드 관상용 화초의 자조금 구조

- □ 관상용 화초의 자조금 거취대상자는 네덜란드 생산자(종묘 생산도 포함) 혹은 EU권역 이외에서 수입업체가 지불하며 EU가맹국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조금는 부과되지 않음.
 - 자조금 거취금액은 연간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 이 부과되지만 도매시장(경매)을 통하고 매매가 되는 수입품의 경우는 낙 찰가격에 대해 부과됨.
 - 자조금의 지불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을 통하고 매매를 행하는 경우는 도매시장이 납세를 대행함.
 - 자조금 납부는 관상용 화초 0.91%, 생산용 모종 0.5%, 종자는 재배 면적에 대하여 1ha 당 34유로(1ha 당 3,400유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0%인 34유로를 납부함),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0.40%를 청구 금액에 추가하고 있음.
 - 이렇게 거취된 자조금의 0.09%는 산업관리기구 소속인 농업도매업 분

야에 지불됨.

□ 종자의 경우 자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네덜란드의 종자 생산자는 재배 면적에 34유로/ha가 부과되어 네덜란드 의 종자 생산자가 신고해서 생산자에게 지불함.
- EU권역 이외의 종자 생산자는 수입 금액의 1%가 자조금으로 부과되고 수입자가 신고하여 네덜란드의 생산자에게 지불됨.

표 3-1. 네덜란드 원예분야 종자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공급자	과세율	지불 방법
네덜란드의 종자 생산자	34유로 / 1ha 당	네덜란드의 종자 생산자 신고로 지불
EU권역 이외의 종자 생산자	수입 금액의 1%	수입업체 신고로 지불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네덜란드 화초 수출 전략 조사 보고서(2009)

그림 3-1. 네덜란드 원예분야 종자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네덜란드 화초 수출 전략 조사 보고서(2009)

□ 네덜란드 모종의 자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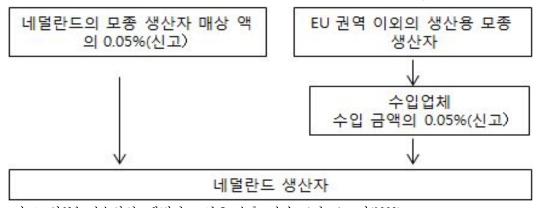
- 네덜란드의 모종 생산자는 총 매출액의 0.05%가 자조금으로 부과됨.
 - 생산용 모종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는 생산용 모종 생산자가 신고해서 네 덜란드의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EU권역 이외의 생산용 모종 생산자는 매상 액의 0.05%가 부과되어 수 입업체가 신고해서 네덜란드의 생산자에게 지불함.

표 3-2. 네덜란드 원예분야 종자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공급자	과세율	지불 방법
네덜란드의 모종 생산자	매출액의 0.05%	네덜란드의 모종 생산자가 신고해서 지불
EU권역 이외의 모종 생산자	수입 금액의 0.05%	수입업체가 신고해서 지불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네덜란드 화초 수출 전략 조사 보고서(2009)

그림 3-2. 네덜란드 원예분야 종자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네덜란드 화초 수출 전략 조사 보고서(2009)

□ 네덜란드의 관상용 화초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체계로 의무자조금이 부과됨.

- 네덜란드의 생산자는 경매를 통하여 낙찰된 총액의 0.51%가 자조금으로 부과되어 도매시장에 지불되며 도매시장이 납세를 대행하고 있음.
 - 유통업자는 구매자 부담 분의 0.4%를 지불하며 도매시장이 납세를 대행함.
 -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받은 자조금 0.91%를 납부하게 됨.
- EU권역 이외에서 생산된 관상용 화초는 수입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낙찰된 총액의 0.51%가 자조금으로 부과되고 도매시장이 납세를 대행하고 있음.
 - 수입된 관상용 화초를 취급하는 유통업자의 경우 구입자 부담 분 0.4% 를 자조금으로 지불하며 도매시장이 납세를 대행함.
 - 도매시장은 생산자 부담과 구입자 부담의 합계 0.91%를 자조금으로 지불함.

표 3-3. 네덜란드 원예분야의 도매시장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공급자	과세율	지불 방법
네덜란드의 생산자 EU권역 이외의 생산자	경매 낙찰가의 0.91% (내역:생산자는 0.51%, 구매자는 0.40%를 지불하며 이 중 0.09%는 HBAG에 지불됨)	■ 네덜란드의 도매시장이 대 하여 지불함 ■ 수입업자 신고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네덜란드 화초 수출 전략 조사 보고서(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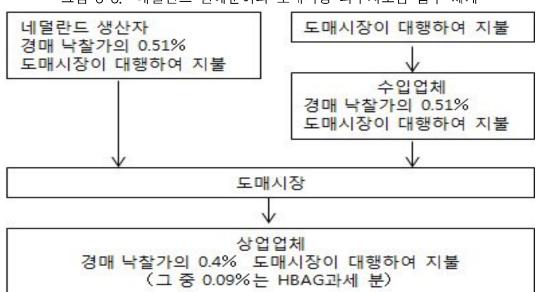


그림 3-3. 네덜란드 원예분야의 도매시장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네덜란드 화초 수출 전략 조사 보고서(2009)

□ 네덜란드 관상용 화초의 경우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시장외 유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조금을 거취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관상용 화초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 신고로 자조금을 거취하고 있음.
 - 생산자는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생산자 부담 분 0.51%과 구매자 부담 분 0.4%로 총 0.91%를 납부하고 있으며 구매자 부담 분에 해당하는 0.4%는 생산자가 대행하여 납입하고 있음.
 - 생산자는 구매자 부담 분인 0.4%의 자조금을 구매자에게 청구하여 자조금을 납부함.
- EU권역 이외에서 생산된 관상용 화초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신고하여 자조금을 지불하고 있음.
 - 자조금은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자 부담 분 0.51%과 구매자 부담 0.40%의 합계로 총 0.91%가 부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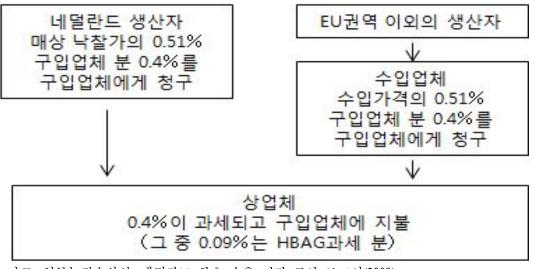
- 이 중 구매자 부담 분 0.4%는 유통업자에게 청구되며 유통업자는 이 0.4%를 수입업자에 지불함.

표 3-4. 네덜란드 원예분야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도매시장 미경유)

공급자	과세율	지불 방법
네덜란드의 생산자	매출액의 0.91% (내역 : 생산자는 0.51%, 구매자는 0.40%을 지불하며 이 중 0.09%는 HBAG에 지불됨.)	네덜란드의 생산자가 신고해서 지불
EU권역 이외의 생산자	수입가격의 0.91% (내역 : 생산자는 0.51%, 구매자는 0.40%을 지불하며 이 중 0.09%는 HBAG에 지불됨.)	수입업자가 신고하여 지불함.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네덜란드 화초 수출 전략 조사 보고서(2009)

그림 3-4. 네덜란드 원예분야의 의무자조금 납부 체계(도매시장 미경유)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네덜란드 화초 수출 전략 조사 보고서(2009)

4. 뉴질랜드

4.1 뉴질랜드 자조금 단체의 설립배경

- □ 뉴질랜드는 1950년대부터 과수자조금법(Orchard Levy Act 1953), 채소자조금법(Vegetable Levy Act 1957) 등 각 품목별로 자조금 법을 제정하여 의무 자조금 제도를 실시해 왔음.
 - 뉴질랜드는 1990년 Levies Act(1990)가 제정되어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 자조금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각 생산자 대표 조직이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1980년대 이후 시장원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농업 부문 정부 예산이 검역이나 기초 연구에 중점이 되고 있음.
 - 뉴질랜드는 1990년 도입한 Levies Act 법률 때문에 생산자는 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자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고 있음.

4.2 원예 분야 자조금 제도의 특징

- □ 원예 분야는 품목의 생산자 대표단체인 Horticulture New Zealand (Horticulture NZ)가 Levies Act(1990)에 근거하여 New Zealand Fruitgrowers Federation(NZFF), New Zealand Vegetable and Potato Growers Federation(Vegfed)에서 거취되는 자조금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음.
 - Horticulture NZ는 포도, 버섯 이외의 모든 원예 품목을 대표하는 단체로 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업계 프로파일과 프로모션(Industry Profile and Leadership)
- 산업 경계 간 보안(Border Security)
- 무역정책(Trade Policy)
- 환경 문제(Environmental Issues)
- 자원 관리 계획(Resource Management Plans)
- 교육, 트레이닝, 캐리어 승진(Education, training and careers promotion)
- 리더쉽 개발(Leadership Development)
- 계절 노동자(임시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과 고용(Labour and employment including seasonal labour)
- 회계 비용(Compliance costs)
- 식품 규정(Food regulations)
- 긴급한 대응(Emergency response)
- Horticulture NZ의 자조금은, 2007년에 제정된 Commodity Levies (Vegetables and Fruit) Order에 근거하고 있음.

4.3 자조금 거출대상 방식 및 수납기관

□ 과수 및 채소 등의 자조금 거출은 다음과 같음.

- 과수의 자조금은 생산자가 \$15.00(0.15%)/\$10,000을 NZFF에 지불 (2012년)함.
- 신선 야채는 생산자에게서 \$45/\$10,000(0.15%)가 징수되어 그 중\$30 은 생산자 단체에 \$15는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감자는, 생산자에게 \$75.00/\$10,000(0.75%)이 징수되고 그 중\$60은 생산자 단체, \$15는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신선 토마토는 생산자에게 \$67.50/\$10,000(0.675%)이 징수되고 그 중 \$52.5가 생산자 단체, \$15가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가공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호박은 생산자에게 \$15/\$10,000(0.15%)가

- 징수되고 그 전액이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가공 야채는 생산자에게 \$56.25/\$10,000(0.5625%)가 징수되고 그 중 \$41.25가 생산자 단체, \$15가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네이블오렌지(Nable orange)는 Commodity Lavies(Nable Orange) Order
 2006에 근거해 자조금이 제정되었으며 생산자 및 대리인이 최대 3센트
 /kg를 New Zealand Citrus Growers Incorporated에 지불함.
- 키위는 Commodity Lavies(Kiwifruit) Order 2012에 근거해 자조금이 제정되어 있으며 수출업자가 최대 0.28센트/수출량을 New Zealand Kiwifruit Growers Incorporated에 지불함.
- 육류는 Commodity Lavies(Meat) Order 2010에 근거해 자조금이 제정되어 있으며 소고기는 최대 \$4.6/도살한 수, 양고기는 최대 \$0.6/도살한 수가 징수되어 Director-General에 지불함.
- 패션 프루츠(Passion fruits)는 Commodity Lavies(Passionfruit) Order 2008 에 근거하여 생산자가 최대 4%/가격 혹은 가치(price or value)를 New Zealand Passionfruit Growers Association Incorporated에 지불함.
- 배는 Commodity Lavies(Nashi Asian Pears) Order 2006에 근거하여 생산 자가 최대 5%/kg를 협회에 지불함.
- 우유는 Commodity Lavies(Milk solids) Order 2010에 근거하여 생산자가 최대 5%/kg를 Dairy NZ에 지불함.
- 계란은 Commodity Lavies(Eggs) Order 2010에 근거하여 50 센트/닭 1마 리당 을 연맹에 지불함.

5. 호주

5.1 호주의 자조금 도입

- □ 호주의 농업 정책 중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무역, 검역 등 국가의 의무로서 수행하여야 할 것과 토지·수원의 보전 관리, 한발 구제 조치등 국도 보전·재해 대책 등이 주된 정책이 되고 있으며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보조 정책은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음.
 - 호주는 농산물의 판매촉진, 연구 개발, 업계의 이해 조정, 정책 제언 등 각 부문 마다 대표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운영 경비는 자조금 수 익으로 충당하고 있음.
 - 호주의 자조금 징수 근거는 연방법령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자조금을 납부하는 생산자는 자조금이 세금의 한 종류라고 인식하고 있음.
- □ 호주의 자조금 운영단체인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는 일차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해 The Primary Industries and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989 (PIERD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호주의 자조금 운영단체는 15개의 공사(계란, 돼지고기, 양모, 면, 낙농, 어업, 임업과 목제품, 곡물, 설탕, 포도와 와인, 식육과 가축, 원예, 식육 수출, 토지와 물, 농업연구개발(상기 14개의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담당))로 구성되어 있음.
 - 1985년에 PIERD법의 전신이 되는 Rural Industries Research Act법이 1985년 제정되었음.
 - 그 후 자조금 자조금 품목별 연구 협의회(Research Council)의 설립, 자금 조달, 연구 관리 체제로 정비되었음.

- 또한 1989년에 PIERD법을 재정비하여 정부 보조 실시, 축산 연구 개발 공사의 운영, 연구협의회의 기업적 경영 및 독립성의 향상 추진하였음.

5.2 호주의 자조금 단체의 특징

- □ 호주의 RDC는 해당 분야의 생산자,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R&D 를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그 성과를 취득 및 공유하고 있음.
 - 이 제도의 특징은 이 되고 있는 것은 「R&D의 수요자(연구 성과의 이용자) 주도」임.
 - 동 제도에서 연구개발 공사의 역할은 생산자, 기업등의 측면에서 연구개 발의 주제, 내용 등을 결정하여 외부 전문 연구기관과 계약하여 연구결 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연구 개발의 수요자 주도 시스템은 PIERD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몇 가지 규칙이 있음. 1. 연구개발 공사가 생산자 및 기업 등의 측면에서 일하고 사고할 것, 2. RDC의 자주성 확보, 3. RDC 스스로 연구개발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음.

□ RDC의 성격은 PIERD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RDC는 사단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장, 정부 대표이사, 전무이 사, 이사로부터 구성되고 사무국을 가지고 있음.
 - RDC는 연차종회를 통하여 거취 대상자, 산업계의 의사가 반영되는 산업 대표 기관의 설치가 규정되고 있음.
 - 연차총회는 RDC의 대표적 의사결정 기관이며 주로 논의와 투표를 통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음.
 - 산업 대표기관은 이사를 지명하는 선임위원회 위원의 지명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이사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향후 5년간의 연

구 개발 계획안, 연간 운영 계획안, 연차 보고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 RDC는 1차 산업 에너지장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에게 업무 지휘 및 감독 권한이 있음.
 - 1차 산업 에너지장관은 산업 대표기관의 지정, 향후 5년간의 연구 개발 계획 및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승인, 연차 보고의 수리, 전무이사를 제외 한 이사의 임명 및 정부 대표 임원의 파견, 선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각각의 연구개발 공사는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실용화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 개발, 기술 이전, 교육 훈련까지 담당하고 있음.
- □ RDC는 연방정부가 농산물 마다 법률에 근거하여 생산자 및 기업 등에서 징수한 자조금(Levy)과 연방정부의 보조금(Matching Funding)을 연구 개발 자금으로 조성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PIERD법에 근거해 해당 업종의 연간 총생산액 (Gross Value of Production, GVP)의 0.5%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GVP의 규모는 매년 일차산업 에너지 장관에 의하여 확정됨.
- □ 호주의 의무자조금은 통상적으로 생산자와 산업계의 협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조금 도입 및 제도개선, 사업 등을 시행할 때는 산업계 내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
 - 호주 연방정부는 1997년 자조금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분류시키는 시 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12항목의 원칙이 있음.
 - 1~11항은 자조금 관련 사업변경 내용에 관한 것이고 12항은 기존의 자조금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한 것임.
 - 이 12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자조금 참여 주체가 자조금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계 내에서 검토를 실시한 후 제시안을 작성하여

-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됨.
- 자조금 사업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제시안은 1. 의무 자조금 목적, 2. 자조금에 의해서 확대되는 시장 3. 산업 및 공공부문에 서 이익의 크기 4. 상대적인 효과 5. 협의과정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품목별로 자조금 도입 및 내용 개정을 위한 12항목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1. 시장이 불경기일 때 자조금의 기능
 - 자조금은 시장이 심각한 불경기에 빠졌을 경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를 설명하여야 함.
- 2. 산업계 조직의 지원
 - 자조금 신청은 가능한 한 모든 자조금 납부자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 또는 자조금 납부자에 의해서 설립되므로 자조금 관련 산업계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을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음.
- 3. 업계의 협의
 - 자조금 제안은 자조금 사업의 다양한 목표를 완수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자조금 규모와 자조금의 활용 방법에 관한 명확한 계획(어떻게 공평한 이익을 줄까에 근거하여)에 모순이 없도록 자조금 납부자에 설명하여야 함.
- 4. 자조금 도입과 지출
 - 자조금 제안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반대 논의의 분석 및 자조금에 관련된 논의와 관계없이 자조금을 도입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또한 자조금 제안은 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적절한 합의 형성과 납부자가 자조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여야 함.
- 5. 대다수의 동의
 - 자조금 제안은 자조금의 부과/징수의 관해서 대다수가 합의가 전재되고 또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6. 공정과 공평
 - 자조금 징수는 자조금 납부자 사이에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함.
- 7. 자조금의 산정
 - 자조금의 부과는 투입량 또는 산출량, 가치 단위 혹은 시장기능의 부진 과 관련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함.
- 8. 자조금의 징수
 - 자조금의 징수 시스템은 투명성과 책임의 관점으로 징수가 효과적이고 용이하여야 함.
- 9.자조금의 관리 조직
 - 새로운 관리 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조금의 도입 시기까지 관리 예정 조직과 협의가 종료되어야 함.
- 10. 연방 정부의 책임
 - 자조금 지출을 관리하는 단체는 자조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연방 정부 에 설명하는 것을 책임져야 함.
- 11. 장래의 재검토(평가)
 - 자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정부가 자조금의 기능, 역할, 등에 대하여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함.
- 12. 자조금의 조정
 - 기존의 자조금 변경, 수정 안은 산업계 단체 또는 자조금 납부자 혹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정부 지시를 받아야 함. 변경절차는 자조금 제 도가 변경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자조금 납부금액 상승, 상 승분에 따른 사용처, 이러한 지출이 자조금 납부자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등을 설명하여야 함.
- □ 호주의 자조금 제도는 생산물 마다 법률로 정해져 있어 각각의 자조금을 관리해 사용하는 단체도 정해져 있음.
 - 자조금의 총괄적 관리는 농어임업성의 자조금국(Levy Revenue Service) 이 실시하고 있음.

- 자조금 납부는 주로 생산자가 출하한 시점에 집하업자 등에 지불하고 집 하업자는 자조금 관리 단체에 납입하고 있어 품목마다 자조금 납부 금 액이 다름.
- 이렇게 거출된 자조금은 각각의 농산물을 위한 연구 개발, 마케팅, 판매촉진, 잔류물 검사, 동식물 위생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며 자조금의 종류는 전부 60가지 이상임.

5.3 자조금 거출 방식

□ 호주의 자조금 거출은 품목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배·사과
 - 배와 사과는 생산자에게 용도별로 자조금이 부과 됨.
 - 국내용 및 수출용 사과는 1.845센트/kg, 배 2.099센트/kg가 징수됨.
 - 주스용은 사과 \$ 2.95/톤, 배 \$ 2.95/톤, 가공용은 사과 \$ 5.5/톤, 배 \$ 2.05/톤이 징수됨.
 - 징수된 자조금은 Horticulture Australia Limited(HAL), National Residue Survey(NRS), Plant Health Australia(PHA)에 지불됨.
- 아몬드
 - 아몬드는 형태별로 자조금이 부과됨. 껍질이 포함된 아몬드는 \$0.01/kg, 껍질을 탈피한 것은 벗긴 것은 \$0.02/kg, 설탕으로 절인 것은 한 것이 \$0.015/kg징수되어 HAL, NRS, PHA에 지불됨.
- 아보카드
 - 아보카드는 생 아보카드에 7.5 센트/kg, 가공한 것 \$0.01/kg가 징수되어 HAL, NRS에 지불됨.
- 0 바나나
 - 바나나는 \$0.017/kg가 생산자로부터 징수되어 HAL, NRS에 지불됨.
- 생강

- 생강은 생산자가 가격의 0.5%를 지불함.

○ 벌꿀

- 벌꿀은 국내용이 2.3%/kg, 수출용이 2.3%kg징수되어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RIRDC), NRS에 지불됨.

○ 야채류

- 야채류는 국내용이 판매 총액의 0.5%, 수출용이 0.5%를 HAL, NRS, PHA에 지불함.

○ 쇠고기

- 쇠고기는 곡물 사료를 주지 않은 소 \$5/마리 당(수출용), 곡물 사료를 준 소\$5/마리 당(수출용), 육용 송아지\$0.9/마리 당(수출용)이 징수되어 Meat and Livestock Australia(MLA), Animal Health Australia(AHA), National Residue Survey(NRS)에 지불됨.
- 수출업자는 소 0.9523 센트/kg, 양 60센트/두 당, 염소50 센트/두 당이 징 수되고 LRS에 지불된다.
- 구매자는 곡물을 주지 않은 소 \$5/마리 당, 곡물을 준 소 \$5/마리 당, 육우용 송아지\$9/마리가 징수되어 MLA, AHA에 지불됨.

○ 닭고기

- 닭고기는 생산자가 0.2344 센트/두당을 NRS, Australian Animal Health Council(AAHC),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RIRDC)에 지불됨(2010).

○ 돼지고기

- 돼지고기는 생산자가 \$2.525/마리 당(2006년 이후)가 징수되어 NRS, Australian Pork Limited(APL)에 지불된다.

○ 우유

- 우유는 각각의 성분 마다 자조금이 부과 되어 유지방분 2.6655센트/g, 단백질 6.4943센트/kg가 징수되어 Dairy Australia, 및 AHA에 지불됨.

○ 곡물

- 곡물은 자조금을 Grains 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GRDC),

PHA에 지불함.

- 곡물 자조금은 농가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리1.02%, 오트(Oats) 1.02%, 호밀 1.005%, 솔 껌 1.02%, 미로 0.71%으로 책정되고 있음.

○ 쌀

- 쌀은 생산자가 출하시 \$3/톤이 징수되어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RIRDC), PHA에 지불됨.

○ 밀

- 밀 자조금은 생산자가 출하시 지불하는 경우는 마당 가격의 1.02%가 징 수되어 Grains 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GRDC), PHA, NRS에 지불됨.

6. 시사점

- □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에 집중.
 - 자조금 사업 중 R&D, 소비촉진 및 홍보 분야에 집중하여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것 보다 시장 규모를 키워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혜택을 공유하고 있음.
 - 자조금 제도를 입법화 하여 '의무와 권한'을 강조하고 있음
 - 외국은 자조금 제도를 입법화하여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을 통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여 무임 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자조금 거취 대상자에게는 납부라는 의무가 지워지는 대신 자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자조금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모릴 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

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가 자조금 사업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꾸준히 실시하여 자조금 사업 분야의 모럴헤저드 방지, 소비촉진 및 홍보 분야에 대한 과대광고 의 사전적 방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자조금 거취 대상자의 자립의식 강화
 - 과거 외국에서는 농업 분야에 많은 정책자금을 투입하였지만 최근에는 자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R&D 및 시장의 규모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음.
 - 생산자를 비롯한 자조금 거취 대상자도 자조금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자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있음.

_제 4 장

의무자조금 제도 발전방안

- 1. 자조금 거출 대상 및 법률적 검토
- 1.1 자조금 거출 대상
-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단계에서 자조금 거출 대상을 법률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원예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경우 초기에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하여 자조금 규모가 커지고 자조금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된 이후에 유통업체, 수출입업체 등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그러나 원예 분야는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출입 업체, 유통업체 등이 자조금 도입 초기부터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파프리카와 같은 경우는 내수용 보다는 대일 수출용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첨단 유리온실을 활용하여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가는 수출업자가 꼭 참여해야 시장개척, 의무자조금 규모 확대 등을 이룰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백합은 종구를 수입하기 때문에 백합 생산자는 종구 수입업자가 포함되

- 어야 자조금 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삼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삼인'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운영하는 '정관장' 등의 가공식품 회사와 운영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생산자와 가공식품 업체가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참다래는 국내 생산 및 수확시기가 종료될 경우 뉴질랜드 키위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도 자조금 단체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조금 거출 대상을 법률적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 의무자조금 실시를 추 진하는 해당 품목에서 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적 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려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품목에서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자조금 거출 대 상을 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의 특성, 자조금 규모, 자조금 거출 대상자 비율, 자조금 거출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자조금 거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원예 분야 중 파프리카, 인삼, 백합, 참다래 등과 같이 생산자 이외에 수출입 업자,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조금 거취 대상을 법률상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움.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자를 법률상으로 한정하게 될 경우 향후 농식품 생산 및 유통환경이 변화되어 다양한 경제주체가 의무 자 조금 주체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다면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그러므로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려는 품목은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조금 거출 대상자를 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적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자조금

거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법 률	내 용	시행규칙 개선 안
제 2조 5항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 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 한다.	 법 제6조를 근거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각 품목의 자조금단체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할 대상을 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무 거출금 납부 대상의 적합성여부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표 4-1.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의 시행규칙 개선 안

1.2 법률적 검토

- □ 입법의 취지가 FTA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품목 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자율적 대응이 필요하고, 아울러 법률적 인 분쟁소지를 고려하여 시행규칙 개선안을 구성하였음.
 - 자조금단체는 그 외형이 법 제2조제3호 규정한 비영리단체로 농수산업자 를 그 회원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서는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비영 리단체 설립시에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거출금과 관련한 납부 대상은 자조금단체 자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입법취지, 자조금 거출 대상의 자율성, FTA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는 것인지가 고려할 사항

이었는데 아래기재를 이유로 신고주의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파단됨.

-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의무자조금과 관련한 계획을 승인받았음에도 다시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자결정에 대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사료되고, 이는 신속성, 효율성, 자율성 등의 측면에 배치된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허가주의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입법취지, 자율성, 신속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시행규칙 개선안 제2호에서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자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조항에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FTA취지, 정부와 자조금 단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가와 국가 간의 법적인 분쟁소지 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됨.
- 2.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및 법률적 검토
- 2.1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은 해당 품목의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가 결정하고 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안에 납부하여야 함.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축산 분야는 유통과정에서 도축장을 경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무자조 금 거출과 납부대상을 한정하기 용이함.
 - 원예 분야는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이고 축산물과 다르게 유통경로가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자조금을 거취할 경우 직거래의 경우는 자조금을 거취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
 - 그러므로 국내 축산 분야 사례를 참고하여 유통단계에서 자조금을 거취하는 것 보다 임의 자조금 단체가 재배 면적 또는 취급 물량 단위로 자조금을 거취하고 있는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해외에서 의무자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많은 단체도 생산자는 재배면적 또는 취급 물량 단위로 거취하고 있으며, 유통업자, 수출입 업자, 가공업 자 등도 취급 물량 단위로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음.
- □ 원예 분야의 의무자조금 거출금 납부는 재배면적 또는 취급 물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경제주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표 4-2.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의 시행규칙 개선 안

법 률	내 용	시행규칙 개선 안
제19조 제4항	제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법 제 19조 제4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대비 징수 2.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입 업자 등: 취급 물량 대비 징수

2.2 법률적 검토

- □ 법 제19조 제4항은 품목별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거출금에 대한 절차적 측면과 이와 관련 된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법령에서는 "납부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선안에서는 "산정기준"이라고 표현하였음.
- □ 의무자조금 산정기준은 품목별 특성과 의무거출금 대상자의 형태에 따라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외사례나 국내사례에서 거출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을 고려하였음.
 - 생산자가 납부하는 자조금에 대한 기준을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대비로 의무거출금 징수기준을 삼은 것은 생산의 결과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행규칙 개선안을 구성하였음.
 - 생산자를 제외한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입업자는 거래의 형태가 수량 대비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하고 있으므로 취급물량만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행규칙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 3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및 법률적 검토
- 3.1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 □ 해외에서 의무자조금을 시행하는 국가는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행정 처분 등의 강력 한 규제가 뒤따르지만 국내 원예 분야는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 단 계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음.

- 국내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축산 분야에서도 자조금 을 납부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자조금 징수 수수료의 차등적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음.
 - 한돈자조금은 자조금 납부율이 약 95%에 달하기 때문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 민사 및 형사상의 소송, 가압류 신청, 자조금 징수 수수료 차등적 지급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납부율이 높지 않은 의무자조금 단체는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 국내 축산 분야의 의무자조금은 도입초기와 의무자조금 미납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의무자조금 납부에 반대하는 생산자, 도축장 등과 각 종 법률 소송에 휘말려 왔음.
 - 그러나 축산분야 의무자조금 제도를 둘러싼 법률적 소송과정에서 의무자 조금 제도 도입과 미납시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승소하였기 때문에 법률 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무자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원예 분야에서도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는 품목은 자조금 납부에 반대하는 생산자 등과 법률적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무자조금 도입초기에는 법률적 제재조치 보다는 자조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 의무자조금의 성공여부는 자조금 거취율에 있기 때문에 자조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조금 납부 대상자가 자조금을 납부할 수 있 도록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 참여주체의 2/3이상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품목의 참여주체는 법률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됨.
 - 의무자조금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의무자조금 거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파프리카는 임의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파프리카 생산자 가 수출을 할 때에는 파프리카 자조금 회원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파프리카 수출농가는 자조금 납부가 암묵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품목은 초창기에 자조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조금 거취대상자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원예 분야의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법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면 자조금 도입을 반대하는 경제주체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자조금 납부 대상자의 '권한과 의무'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함.
-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품목 중 납부대상자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조금 납부율이 높아진 후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별도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품목에서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정부 정책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 자조금 납부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품목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물류표 준화 사업(공동 선별비 지원사업, 포장재비 지원사업 등), 수출 물류비

보조 사업 등을 신청할 때 자조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자조금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

법 물	내 용	시행규칙 개선 안
제37조 제 2항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 무자조금 관리 위원회가 결 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자 	1. (의무자조금 미납시 과태료 이외의 제재조치)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의무납부자가 의무자조금단체 및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해당 품목별 관련문서 등의 발급제한

표 4-3.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미납시 제재조치 개선안

3.2 법률적 검토

- □ 법 제37조 제2항 제2호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명시하고 있음.
 - 위 규정은 대규모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입업자 등 거래 규모가 상당한 납부의무자들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됨.(법에서 의무거 출금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업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대규모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의무거출금액도 상당하므로 법 제 37조 제2항 제2호를 가볍게 평가하여 의무거출금에 대한 불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음.
 - 따라서 의무거출금 납부자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보다 실효 성 있는 규정이 필요함.

□ 행정적 지원의 제한

-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에서 적극적인 생산활동, 소비촉진활동, 판촉활 동, 개발연구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의 원활한 재원확보가 필요함.
 - 의무자조금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기반으로 자조금 단체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권익신장을 위한 통계자료, 평가자료, 거래자료 등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됨.
- 의무거출금 대상자가 자조금단체 및 정부에서 제공받는 행정지원 및 이 와 관련한 문서를 제한함으로서 불성실한 납부자는 정부 지원 및 거래상 의 문제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성실한 납부의무를 유도 할 수 있다고 판 단되어 시행규칙 개선안을 구성하였음.
- 4. 사무국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법률적 검토
- 4.1 사무국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경우 사무국의 설치는 법률제 18조 사무국의 설치 등에 명시되어 있음.
 - 18조 2항에는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 어 있음.
 -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단체 사무국 업무는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과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 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예 분야는 의무자조금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려는 품목의 경우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사무국활동 여부에 따라 자조금 단체의 운영 활성화 여부가 결정됨.
- □ 현재 원예 분야 임의자조금 단체는 자조금 규모가 크지 않아 사무국 운영 및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할 경우에도 자조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 채용 및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무자조금 사무국은 관 런 분야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채용되어야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이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독립되어야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이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독립되지 않았을 경우와 독립되었을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함.
 - 의무자조금 단체와 같이 사단법인 성격이 강한 조직의 경우는 CEO의 역량에 따라 운영이 활성화 되거나 때로는 CEO의 모릴 해저드가 발생할 경우 파산 및 도산하기 쉬움.
- □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경우에도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감안하여야 할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독립성이 확보될 경우 단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와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장의 업무 지시로 극복 할 수 있는 부분임.
 - 의무자조금 사무국이 독립되지 않고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장 소관으로

운영되다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 및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려는 여타 품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표 4-4.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장점 및 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사무국의 독립성이 확보되었 을 경우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꾸준히 실시할 수 있음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사무국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 확보가 용이함 예산에 대한 사용이 의무자조금관리 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사무국장의 책임과 정부관리 및 감독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성확보가 용이함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 직원의 채용이 용이함 의무자조금 관련 생산자 교육 및홍보가 용이함 	 사무국의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안 관련 문제 및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이 느림 의무자조금의 규모가 작을 경우인력 채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자조금 사업 추진이 어려움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업무체계가확립될 때까지 사무국 의 업무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음
사무국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자조금 관리 위원회 및 위원장의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함 사무국 업무가 의무자조금 도입 초창기에 활성화되기 용이함 관련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 	 자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장의 모 럴 해저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 전에 이를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어려움 사무국 운영이 체계화되기 어렵고 자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사무국 운영 및 독립성에 대한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표 4-5.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법 률	내 용	시행규칙 개선 안
제 18조 제 2항	2항: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 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조금 관 리위원회의 의결을 거 처 위원장이 정한다.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규정에는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 운영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의무자조금단체 사무국은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의무자조금단체 사무국 운영규정에는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장과 의무자조금 사무국 사이에 독립성 여부를 명시하는 조항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의무자조금단체 사무국 운영규정에는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이 이 확보될 수있도록 직원의 교육 및 채용기준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의무자조금단체의 임원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과 채용직원 사이에 다른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특수관계인은 제외해야 한다. 4.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규정에는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사업의 발주 및 계약등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수있는 절차 및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 운영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 정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함.
 - 의무자조금 사무국 정관은 해당 의무자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실체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고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무국을 운영하여 야 하므로 의무자조금 사무국 정관에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

- 운영과정의 투명성의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신청할 경우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정관에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4.2 법률적 검토

- □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2조 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 리법인임.
 -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 당시에 정관(안)을 의결한 후 설립이후 사무국 운영규정 만들었으므로 사무국의 운영 근거는 정관, 사무국 운영규정, 위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이외에 다른법률에서도 규정됨.

□ 사무국의 전문성, 독립성 관련 규칙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국 독립성의 부여 정도에 따라 사무국 운영의 장단점이 있고 상당수의 다른 비영리단체들의 현실적 운영 실태를 고려 해 볼 때 사무국의 역할은 고유 업무 역할도 수행하지만, 임원들의 사적 이 부분까지도 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사무국과 관련한 업무의 독립성, 인사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 울러 임원과 사무국 구성원 사이의 특수 관계를 배제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음.

□ 각 조문에 대한 제안

- 제 1호는 사무국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성하였음.
- 제 2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무국의 운영은 정관, 운영규정, 여타

다른 법규에 의해 운영되어 지므로 사무국의 총괄책임자인 의무자조금관 리위원장과 사무국 사이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사무국이 자조금 단체의 관련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 3호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정으로 전문성은 사무국 구성원들의 채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직원의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할 것이고 지속적 인 교육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자조금단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과의 특수 관계를 배제함으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구성하였음.
- 제 4호는 의무자조금단체의 주된 업무가 소비촉진 활동, 판촉활동, 연구 개발활동 등 농수산업자 및 소자비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 로 이러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제3자에게 위탁처리 할 경우가 대부분임.
 - 의무 자조금단체가 전문적인 제3자에게 위탁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회계처리 등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무국운영규정에 명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 5. 사무국 운영비 보조 범위와 법률적 검토
- 5.1 사무국의 운영비 보조
- □ 의무자조금 규모가 축산분야와 같이 약 100억 원 규모에 달할 경 우에는 사무국 운영비 보조가 100분의 8이므로 사무국 운영비로 8억 원을 사용할 수 있어 인건비, 운영비 등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의무자조금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거나 이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사무국 운영비 보조가 8천만 원에서 일억 원 수준으로 결정되므로 의무

자조금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 원예 분야에서 임의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파프리카, 인삼, 백합, 참다래와 같은 경우는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하더라도 당분간 생산자 호응이 낮아 의무자조금 조성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됨.
 - 원예분야의 자조금 규모가 축산부문과 같이 커지거나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예분야 의무자조금 조성액 에서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 원예 분야 자조금은 자조금 거취대상 자체 부담금(50%)과 정부보조금(50%)로 이루어지므로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비 보조를 자체 부담금 기준이 아닌 자체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이 합산된 총액 개념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음.
 - 2011년 파프리카 임의 자조금 규모가 자체 부담금 약 924백만 원, 정부보조 924백만 원으로 총 1,848백만 원 규모임.
 - 파프리카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될 경우 총액 개념으로 사무국 운영비를 보조할 경우 자조금 조성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므로 사무국 운영비보조를 100분의 8까지 사용할 수 있음.
 - 파프리카가 사무국 운영비 보조를 100분의 8을 사용할 경우 약 148백만 원을 사무국 운영비 보조에 사용할 수 있음.
 - 2011년 파프리카 사무국 운영비가 약 264백만 원에 해당되지만 의무자 조금을 도입할 경우 자조금 규모가 현 수준보다 커질 것을 감안하면 해 당 품목 자조금 거취 대상자자 조성한 금액과 정부 보조금이 합산된 수 준에서 사무국 운영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표 4-6.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법 률	내 용	시행규칙 개선 안
제 17조 제 7항	7항: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비 보조) 법 제 17조 7 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1. 의무자조금 조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 우: 의무자조금 조성 총액의 100분의 8 2. 의무자조금 조성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 우: 의무자조금 조성 총액의 100분의 10 3. 의무자조금단체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 국 운영비 사용내역을 매 정부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5.2 법률적 검토

- □ 본 제도가 시행초기단계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개선(안)을 제안함.
 - 다만, 운영비의 대부분이 사무국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함.
 - 그러므로 사무국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게 보고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사무국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음.

6. 자조금 운용 평가

- □ 의무자조금 단체가 실시하는 자조금 사업은 해당 품목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이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 각 종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자조금 사업의 방향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구성될 경우 해당 품목의 이익과 경쟁 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조금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단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무자조금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공정성, 공익성, 효율성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그러므로 정부 보조를 받는 임의 또는 의무자조금 단체는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 공정성, 공익성 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 현재 원예 분야 자조금 단체는 임의 자조금 단체 형태로 구성되어있고 자조금 조성 및 운용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임의 및 의무자조금 단체가 자조금 운용 및 평가를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조금 사업의 효과, 사업방향의 적절성, 운영 효율성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는 자조금 단체의 신뢰성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자조금 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기 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 원예 분야의 의무 및 임의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사업규모를 고려

하면서 자조금 운용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자조금 단체가 연합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야 함.

- 원예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자조금 단체가 연합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자조금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3개의 자조금 단체가 2,000만 원 씩을 부담할 경우 6,000만 원이 조성되며 이 정도 금액 수준이면 전문기관과 자조금 사업 평가 관련 용역발주를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원예 분야 자조금 사업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 규모별로 평가항목을 한정시키는 것이 필요함.
 - 자조금 사업규모가 작을 경우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포함된 다면 자조금 사업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0억 원을 기준으로 자 조금 사업평가 내용을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조금 사업 평가내용이 10억 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 임의 자조금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 □ 자조금 운용 평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법 률 내용 시행규칙 개선 안 제 26조 3항 자조금 운용 평가는 2개 기관이상 이 공동으로 발주를 위탁할 수 있으며 자조금 조성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자조금 조성규모 10억 원 미만 3항: 제 1항 및 제 2 품목별 생산, 유통, 수입, 수출 현황 등 내부 및 외부 환경분석 항에 따른 외부전문기 자조금 단체의 일반현황과 사업별 운영현황 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분석 제 31조 평가의 절차 및 내용,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 제 1항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 성 등 사업성과와 관련된 분석 에 관하여 필요한 사 2. 자조금 조성규모 10억 원 이상 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품목별 생산, 유통, 수입, 수출 현황 등 내부 령으로 정한다. 및 외부 환경분석 자조금 단체의 일반현황과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효과, R&D 효과 등의 사업별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 성 등 사업성과와 관련된 분석

표 4-7.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운용평가 개선방안

6.2 법률적 검토

- □ 법률 제31조 제1항은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 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화 하고 있음.
 - 동법 제31조 제2항은 외부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평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자조금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전 문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및 분석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임의 및 의무 자조금 단체가 활성화되거나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감당이 어려울 수밖 에 없음.
 - 자조금 사업이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조금 조성 규모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임의 자조금 단체는 운영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자조금 단체가 연합하여 자조금 사업의 운용평가를 받음으로써 해당 자조금 단체의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유사 품목 자조금 단체 간의 공조 및 협조체계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행규칙개선안을 제안함
 - 단, 자조금 단체는 자체적으로 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경험칙이 충 족되면 자조금 운용평가에 대한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전인 조직에서 인 중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미국사례와 같이 전문적인 평가기관 설립을 통하여 자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제 **5** 장

결 론

- □ 이 연구는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 의무자조금 거출방식, 의무자 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비 보조, 의무자조금 운용 평가 부 분의 법률적 고려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의무자조금 도입시 법률적 고려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서 국내 사례는 기존 임의자조금 단체인 파프리카, 백합, 인삼, 참다래 사례를 활용하였고 해외 사례는 미국, 영국, 네델란드, 뉴질랜드, 호주 사례를 활용하였음.
 - 의무자조금 활성화 방안 제시는 법률적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의무자조금 단체가 도입과 실현가능한 시행규칙(안)을 제시하였음.
-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은 축산 분야와는 달리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생산자 조직화, 통합 마케팅 조직을 주체로 하는 수직적 계열화, 자조금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하여 빠른 시일에는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원예 분야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는 파프리카, 백합, 인삼, 참다래

가 있음.

- 원예 분야에서 임의자조금을 운영하는 품목은 작물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지만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자조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는 의무자조금 단체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수급안정, R&D 분야, 생산자 단체 및 마케팅 조직 육성 등의 분야 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품목의 모든 경제주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임.
 - DDA, WTO 등 세계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등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생산자, 유통업체, 수출입업체, 소비자의 중요하고 다양한 이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단체와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지금까지 정부는 원예 분야에서 임의자조금 단체, 품목별 대표조직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원예 분야 중 현재 임의자조금 단체를 운영하는 품목이외에 자조금 사업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품목 경제주체 주도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원예 분야의 많은 품목별 단체는 향후에도 정부가 생산, 유통, 가 공, 수출입, 소비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정책사업을 통하여 주도 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음.
- □ 향후 농산물 무역 자유화 추진 기조에 따라 국내 원예 분야의 자조금 제도는 미국, 영국, 네델란드,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 생

산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원예 분야의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은 해당 품목관련 경제주체의 이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그러나 아직까지 원예 분야의 많은 품목이 자조금 조성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율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무자조금에 대한 추진의지 및 명확한 입장이 필요함.
- 1.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 의무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수출입, 소비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R&D,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의 공익적 수단을 통하여해결하는 방식임.
 - 의무자조금 단체가 의무자조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해외 사례와 같이 발전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단체는 법률이 보장하는 단체이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지자체-생산자 단체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생산자"를 연계하는 정책추진 체계가 "정부-지자체-의무자조금 단체, 생산자 단체(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생산자"체계로 개편될 수 있음.
- □ 원예 분야의 의무자조금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 수립되어야 함.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제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1. 생산 자 및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 2.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보, 3. 해당 품목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무자조금 단체 발전의 선도로 선정하였음.
- 의무자조금 단체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가 자조금 사업의 취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전달할수 있도록 정부, 자조금 단체 모두 노력하여야 함.
 - 현재 원예 분야 품목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는 자조금 사업의 취지, 필요 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및 의무 자조금 도입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정부 및 원예 분야의 다양한 단체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 함.
 -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하더라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지원 사업, 산지, 도매, 수출입, 소비지 유통 분야 등의 정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정부 정책 사업이 의무자조금 단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단체를 설립한 품목에 한하여 각 종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게 될 경우 자조금 단체의 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정부 정책사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 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정부에서 각 종 정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무자조금 단체는 각종 정책사업 입안을 위한 실태파악, 정책사업 대상 조직 및 시설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 독 기능을 철저히 한다면 정책 사업의 추진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의무자조금 단체가 설립될 경우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자조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의 자조금 단체 중 파프리카는 내수 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는 품목 이므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품종개발, 생산 매뉴얼 확립 및 보급, 수 확 후 품질관리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야 함.
- 원예 분야는 품목 특성에 따라 자조금 사업을 통하여 대응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분야가 다름.
- 그러므로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하여 해당 품목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사업이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함.
- 정부는 의무자조금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의무자조금 단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함.
 - 원예 분야 중 의무자조금을 빠르게 도입한 품목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 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품목이 자연재해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거나 정책사업의 우선 배정, 현재 약 50: 50 규모의 매칭 펀드 한시적 확대 등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그림 5-1.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안

원예분야 의무자조금 정책의 기본방향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 촉진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햠상 에 기여 선택과집중 을 통하여의 무자조금 단 체 발전을 선도

- 2. 품목단체의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방안
- □ 정부 정책방안 이외에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의무자조금 제 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은 품목별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주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생산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생 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적구성 및 조직체계를 갖추기 어려움.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용이한 것은 주산지가 한정되어 있고 생산자 수가 적은 품목임.
 - 실례로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은 주산지가 한정되어 있고 생산자 수가 적기 때문에 임의 자조금을 도입할 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임원을 선출 하고 이들의 논의를 통하여 자조금 단체 구성되었고 할 수 있었음.
- □ 의무자조금 단체의 출범은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품목 경제주체의 찬성을 기초로 자조금을 거취 하여 공익적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교육 및 설득, 대화와 타협 등의 고도의 민주적 운영기법이 필요함.
 - 의무자조금 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특정 경제주체나 단체를 옹호하거 나 기존의 기득권을 고집하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이 무산되기 쉬움.
 -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가 의무자조금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부분에서 생산 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의견을 소홀히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반발이 발생하여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이 무산될 수 있음.
-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 및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계별 발전 방안이 필요함.

- 의무자조금 단계별 발전방안은 현재 임의자조금 단체가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가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함.
 - 임의자조금 단체가 있는 품목은 자조금 거취 대상자의 찬성이 있으면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임의자조금 단체가 없는 품목은 의무자조금 추진 주체부터 구성하여야 함.

표 5-1. 의무자조금 단체 도입 및 활성화 방안(임의자조금 단체가 있는 경우)

1단계	○ 의무자조금 도입 관련 논의 및 총회 개최 • 의무자조금 거취 대상, 거취 방식,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논의 • 대의원회, 자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의무자조금 도입 관련 찬반 투표 실시
2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신청 •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에 필요한 각 종 서류, 절차 등을 완료하여 농 림수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신청
3단계	○ 의무자조금 사업 운용 및 발전방안 모색 • 사무국 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 해당 품목에서 필요한 분야에 자조금 사업 운용(R&D, 소비 촉진, 홍보, 교육, 시장개척 활동 등) • 단기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4단계	○ 정부 정책 파트너 역할 수행 및 경쟁력 강화 • '정부-자조금 단체-생산자'를 연계하는 정책체계 확립 • 자조금 사업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표 5-2. 의무자조금 단체 도입 및 활성화 방안(임의자조금 단체가 없는 경우)

1단계	○ 의무자조금 추진 주체 구성 •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생산자,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의 생산자 단체(품목특성에 따라서 유통업체, 수출입업체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거취 대상 확정
2단계	○ 사무국 설립 •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에 필요한 절차(대의원회 및 자조금 관리 위원회 구성, 자조금 거취 방식, 사무국 직원 채용, 정관 작성 등)진행 • 조금 거취 대상자의 교육 및 홍보
3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신청 •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에 필요한 각 종 서류, 절차 등을 완료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신청
4단계	○ 의무자조금 사업 운용 및 발전방안 모색 • 자조금 사업이 필요한 분야 확정 • 필요한 분야에 자조금 사업 운용(R&D, 소비 촉진, 홍보, 교육, 시장개 척 활동 등) • 단기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으로 전문성 구축
5단계	○ 정부 정책 파트너 역할 수행 및 경쟁력 강화 •'정부-자조금 단체-생산자'를 연계하는 정책체계 확립 •자조금 사업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 □ 임의자조금 단체가 있는 품목은 의무자조금 도입 및 발전 방안이 4단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의자조금 단체가 없는 품목은 의무자 조금 도입 및 발전 방안이 5단계로 구성할 수 있음.
 - 임의자조금 단체가 있는 품목이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경우 의무자조금 도입 관련 논의 및 총회 개최를 개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함.

-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의무자조금 사업 운용 및 발전방안 모색하고 정부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당 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임의자조금 단체가 없는 품목이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경우 초창기에는 의무자조금 추진 주체를 구성하고 사무국 설립,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무 자조금 단체 설립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러한 과정이 완료된 후에는 의무자조금 단체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해당 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함.

부 록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
-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4.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 8. "임의농수산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 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 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6. 자조금 단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연 및 지원)

-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의무자조금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하여야 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의무거출금
-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

-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 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의 설치 등)

-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에 관한 사항
-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총회의 운영)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 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 2. 재적 농수산업자(제2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 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 는 경우
- 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운용계획 및 결산
- 4. 운용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의원회)

-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 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 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 2. 의무거출금의 수납
-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 5.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 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 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 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 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 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

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 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 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 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 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 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 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 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

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임의자조금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 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임의거출금
-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 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 조금위원회를 둔다.

- 1. 임의자조금의 폐지
- 2. 임의거출금의 금액
-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 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 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①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용·관리한다.
-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8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 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

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 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 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 린 자
-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1350호, 2012.2.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조금단체의 요 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제2항 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록 2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절차

- □ 현행 자조금 단체는 대부분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전환하여 임의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음.
 - 정부는 2010년도 상반기부터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29개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였음.
 - 품목별 대표조직은 해당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 업체, 가공업체, 수출입 업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자율적 논의를 바탕 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 품목별 대표조직 구성은 기존 임의 자조금 단체에서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고 기존 자조금 단체 없이 신규로 설립된 품목별 대표조직도 있음.
 - 원예 분야는 대다수 농협중앙회가 임의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농협의 참여 없이 순수 생산자 및 영농조합 법인이 임의 자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품목은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등은 임의 자조금 단체가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전환되었음.
- □ 농수산자조금 법률에서는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 농수

산 자조금 또는 임의 농수산 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 단체가 있을 때에는 하나 의 자조금 단체로 통합하여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임의 자조금 단체가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 1단계: 의무자조금 설치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2단계: 농식품부에 승인을 얻은 후 농수산업자 및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투표,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3단계: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수에 따라 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 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농수산업자 수가 1천명 미만: 대의원 수 50명 이상
 - 농수산업자 수가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의원 수 80명 이상
 - 농수산업자 수가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대의원 수 150명 이상
 - 농수산업자 수가 10만명 이상: 대의원 수 250명
- 4단계: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11명 이상 21명 이하) 구성 및 운영
- 5단계: 사무국 설치(품목별 통합 사무국 설치 가능)
- 6단계: 의무 자조금 단체는 2년에 1회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 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표-부록.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구 분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1단계	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 및 해당 농수산업자의 10% 이상 서명 후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및 승인	의무자조금 설치 계획서 농식품부 제 출 및 승인		
2단계	임의자조금위원회 설치	농수산업자 및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투표,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		
3단계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 작성(운용방식, 관리, 심의 및 의결 방식 등) 후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수에 따라 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마련		
4단계	2년 마다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11명 이상 21 명 이하) 구성 및 운영		
5단계	-	사무국 설치(품목별 통합 사무국 설 치 가능)		
6단계	_	의무 자조금 단체는 2년에 1회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를 농식 품부장관에게 제출		

참고 문헌

김동환 외, 2006, 「원예농산물 자조금 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식품유통연구, 제23권 제4호, 12						
이용선 외, 2010,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외, 2008, 「파프리카 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외, 2010, 「품목별 대표조직 기능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자조금연구원, 2009, 「자조금 도입백서」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2008, ^r The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Order 2008 J						
, 201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11」						
Australian Egg Corporation Limited, 2011, 「Annual Report 2010-2011」						
Australian Government Comlaw, 2003, Primary Industries Levies and Charges Collection						
ACT 1991,						
Australian Pork Limited, 2011, 「Annual Report 2010-11」						
Cotton 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 2011, 「Annual Report 2010-11」						
Dairy Australia, 2011, 「Annual Report 2010-2011」						
Forest & Wool Products Australia, 2011, 「Annual Report 2010-2011」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2011, 「Annual Report 2010-11」						
Grains 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 2011, Stakeholder Report 2010-11,						
Grape and Wine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2011, 「Annual Report 2010-2011」						
Horticulture Australia Limited, 2011, 「Annual Report 2011」						
Horticulture New Zealand, 2012, 'Horticulture New Zealand Commodity Levy Proposal						
Discussion Document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2009,「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農産物の生産・貿易政策						
の現狀」						
Kawanami Ryoichi, 1998,「オーストラリアの農業研究開發の特徴と社會的・経濟的背景」,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2011, 「Annual Report 2010-11」						
New Zealand Legislation, 1990, Commodity Levies ACT 1990						
, 2004, 「Commodity Levies(Meat) Order 2004」						
, 2006, Commodity Levies(Nable Oranges) Order 2006						

, 2006, 「Commodity Levies(Nashi Asian Pears Order 2006」							
, 2007, 「Commodity Levies(Vegetables and Fruit) Order 2007」							
, 2008, 「Commodity Levies(Passion fruit) Order 2008」							
, 2009, 「Commodity Levies(Milk solids) Order 2009」							
, 2010, 「Commodity Levies(Eggs) Order 2010」							
, 2012, 「Commodity Levies(Kiwifruit) Order 2012」							
Sugar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2011, 「Annual Report 2010-2011」							
the Japan Society for Science Policy and Research Management, 1998, Vol.13, No.3/4							
United States Development of Agriculture, 1996, ^r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 _J							
獨立行政法人 農畜産業振興機構, 2003, 「畜産の情報―特別レポートー月報海外編 豪州の							
課徴金制度について一牛肉・酪農を中心に一							
獨立行政法人 農畜産業振興機構,海外情報 畜産の情報,2012,「米國における牛乳・乳製品							

の消費擴大に向けた最近の取組~牛乳·乳製品のチェックオフ制度の仕組み~」 農林水産省 生産局生産流通化振興課,2008,「農林水産貿易円滑化推進委託事業 オランダ 花き輸出戰略調査報告書」

De Nederlandse tuinbouw(http://www.tuinbouw.nl/) 홈페이지 Horticulture New Zealand(http://www.hortnz.co.nz) 홈페이지

The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http://www.ahdb.org.uk/) 홈페이지 The Horticultural Development Company(http://www.hdc.org.uk/) 홈페이지 United States Development of Agriculture(http://www.ams.udsa.gov/) 홈페이지

C2012-23, 11-1541000-001531-01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9.

발 행 2012. 9.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